

朝鮮王朝의 行政史研究

金雲泰
(教授)

目次

序

第一章 朝鮮王朝行政의 環境的 狀況(前號所載)

- 第一節 朝鮮王朝의 社會經濟的 基礎
 - (一) 土地制度
 - (二) 商工業發達의 不振
 - (三) 財政制度
 - (四) 社會身分的 構造

第二節 朝鮮王朝의 政治文化

- (一) 儒教文化
- (二) 朝鮮朝 儒教의 政治思想
- (三) 慕華思想의 事大秩序

第二章 朝鮮王朝의 統治體制(前號所載)

- 第一節 統治構造의 機能
 - (一) 中央官制의 再構成
 - (1) 太祖初의 官制
 - (2) 官制改革
 - (3) 議政府의 變遷
 - (二) 經國大典의 中央統治機構
 - (1) 議政府
 - (2) 六曹
 - (3) 六曹屬衙門
 - (4) 承政院
 - (5) 司憲府
 - (6) 司諫院
 - (7) 弘文館
 - (8) 司法機關
 - (9) 司法行政
 - (10) 中央의 軍事組織
 - (11) 權設職

(三) 地方行政組織(初期)

- (1) 地方行政區域
- (2) 地方官制組織
- (3) 地方自治的 組織(鄉所, 鄉約斗面洞, 里, 總)
- (4) 京鄉間의 諸連絡機關(京在所, 京邸吏, 營邸吏)
- (5) 地方의 軍事組織

第二節 行政過程(本號所載分)

- (一) 人事行政
 - (1) 科舉制度
 - (2) 官僚의 人事慣行 및 品階
- (二) 財務行政

- (1) 財政上의 一般的 性格
- (2) 財政機構
- (3) 財政節次
- (4) 財政의 内容

(三) 戶籍管理

- (四) 交通・通信
 - (1) 都市・道路・驛傳
 - (2) 烽燧(烽火), 漕運(漕轉)

第三節 朝鮮王朝의 政策決定過程(前號所載)

- (一) 序論
- (二) 朝鮮王朝 政治過程의 狀況的 特徵(問題의 特性)
- (三) 朝鮮王朝 政治體制의 政策決定過程의 分析
 - (1) 政策決定過程의 儒教的 政治文化
 - (2) 立法過程

第二節 行 政 過 程

朝鮮王朝(初期)의 中央 및 地方의 行政組織管理와 地方自治등에 關해서는 第一節에서 論하였으므로 本節에서는 人事行政, 財務行政, 戶籍管理, 交通通信行政 등에 關하여 論하기로 하겠다.

(一) 人事行政

(1) 科舉制度——科舉制度의 起源은 中國 隋代에 나타난 選舉新法인 進士科이었다⁽¹⁾. 其後 唐·宋代에 이르러 制度의 完成을 보게 되었는바 科舉의 制가 우리나라에 導入되어 完全히 採用을 보게 된 것은 高麗朝 光宗 9年(958) 5月 翰林學士 雙冀의 建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며⁽²⁾ 其後 一千年間의 用人의 길이 오로지 科舉에 있게 되었다.

朝鮮朝의 科舉制는 대개 高麗의 舊制의 의거하여 약간 變通을 加한 것이었으나 그 두드러진 特徵은 文化政策의 基本을 이루었던 儒教를 바탕으로 한 點이라 하겠다. 開國以來로 여러번 改革을 보았지만 이제 經國大典에 나타난 一代의 通制를 보건데 科舉는 三大部類로 区分되었으니 文科, 武科, 雜科가 그것이다.

文科에는 大科와 小科(生進科)가 있었으나 尚文의 傾向으로 흔히 文科라 하면 大科를 指稱한 것이며 科試중에서도 가장 重視된 文官資格試驗에 該當한 것이었다. 文科는 곧 高麗의 製述, 明經의 所謂 兩大業制를 繼承한 것이며 武科는 일종의 武官資格試驗으로 文科와 같은 大科, 小科의 別이 없는 單一制였었고 雜科는 高麗의 醫·卜·地理·律·書·算의 이론과 雜業에 該當하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技術官資格試驗이었다.

三科는 모두 每三年에 한번 實施하는 定期의 「式年試」(子, 午, 卯,酉年을 式年으로 함)를 原則으로 하고 國喪같은 事故가 있으면 延期되었다. 그 式年前年秋(대개 八月)에 初試(準備試驗)를 漢城府 및 八道에서 地域別로 觀察使 主宰下에 施行하였다가⁽³⁾ 當年春初(대개 二月)에 覆試(再考試)를 본다. 武科, 雜科에서는 이로써 登第者를 選定하며 文科에 있어서는 地方의 初試와 中央의 覆試를 通過한 者를 小科의 及第 또는 小成이라 하고 다시 大科

(1) 本來 中國古代에서는 先進者の 推薦에 依하여 新人을 採用하는 것이 原則이었다. 이러한 推薦制는 魏, 兩晉과 南北朝에 걸쳐 九品中正이라는 制度가 施行됨으로서 한때 結實을 보게 되었다. 九品中正이란 各州郡에 選舉官(中正)을 두고 管下人物의 優劣을 九等(上, 中, 下에다 각자 上中下를 別히함)으로 区分해서 中央에 薦報해 하여 吏部에서 任用하는 法인바 이러한 制度는 中正官의 情實이 介入되어 弊가 많았음으로隋代에 들어와서 進士科라는 選舉新法 곧 詩賦論策의 試驗을 보여 合格者를 採用하는 制度를 보았다. 進士라 함은 仕路로 進出할만한 資格을 가진 知識人이라는 意味로서 古來의 推薦制로부터 考試制로 轉進한 根本的大改革이었다. 이 進士科는 其後 歷代를 一貫한 科舉制의 直接起源이 있다. 崔南善著 朝鮮常識 東明社. 1948. pp. 105 ff. 宮崎市定著 科學(中國의 試験地獄)

(2) 韓國史年表, 震檀學會, 乙酉文化社. p. 116.

(3) 考試官은 漢城試는 이를 따로 定하되 各道의 鄉試는 觀察使 守令에서 二人이 이에 當하는 것이一般的의例이었으나 때로는 京試官이 出張하기도 했다. 특히 小科初試를 監試라고 한 것은 監司(觀察使) 主宰인 까닭이었다.

初試와 覆試 및 殿試(御前에서 하는 最後考試)를 치른뒤에 大科의 及第 곤 文科出身이 된다(武科에도 殿試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文科의 覆試를 會試(또는 監試覆試, 生進覆試)라고도 한것은 各地方의 小科初試를 치른 合格者를 中央 漢城에 모아 禮曹의 主宰下에 合試하였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가장 重視된 文科考試의 節次를 大略 살펴 보건데, 文科에는 生進科라 하는 小科와 「文科」라 부르는 大科가 있었고 小科는 다시 初試 覆試의 二段階, 大科는 다시 初試 覆試 殿試의 三段階가 있어, 原則的으로 이 五段階를 차례로 通過해야만 及第가 되는 것이었다.

우선 第一段階인 小科初試(監司主宰인 까닭에 一名 監試 初試 또는 初試監試 生進試라고 함)에는 麗制以來로 製述(進士)科와 明經(生員)科의 二種이 있었으나 그중에 더욱 崇高되는 것은 進士科이었다. 進士科는 賦一篇과 古詩·銘·箴 중에 一篇을 짓게 하며 (뒤에는 賦一篇) 生員科는 五經의 義一篇과 四書의 疑一篇을 짓게 하였으며 각 道의 定數에 따라 大略 각각 700人(뒤에는 540人) 都合 1400人(뒤에는 1080人)을 選拔하였다. 그리고 이 小科初試에 代行하는 것으로 四學儒生에게는 成均館 大司成이 施行하는 陞補⁽⁴⁾ 四學合製등이 있고 地方에서는 各道都事와 開城·江華留守가 施行하는 公都會등이 있어 이에 合格되면 바로 小科覆試에 應할 수 있었으나 그 定員은 각각 數人에 不過하였다.

다음 第二段階인 小科覆試(一名會試)는 初試에 合格한 者를 中央으로 모아 成均館에서 禮曹의 主宰下에서 施行하는 第二次試驗으로서 이 覆試에서는 初試와 同一한 科目을 課하여 進士·生員各科에 各一百人 計二百人을 考選하였다. 元來 覆試에서 初場의 詩賦에 合格한 者를 進士라 稱하고 終場의 經書疑義에 合格한 者를 生員이라 稱하고 進士는 士流에 參列하게 된 資格을 賦하고 生員은 成均館의 學生 또는 研究員이 되었음을 말한 것이었으나 兩者는 漸次 實際上 同一視되여⁽⁵⁾ 成均館에 入學하는 資格뿐만 아니라 士類로서 社會的地位를 公認 받고 下級官吏에 就職하는 資格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或은 이것을 小科 또는 小成이라하여 滿足하고 더 이상 大科에로의 進取를 斷念하는 風이 생기게 되었고 더욱이 近世에 이르러 科舉가 勢家의 瓶終을 받게 되면서 地方의 應學者는 거의 여기에 目標를 두는데 그쳤던 것이다.

다음 第三段階인 大科初試(東堂初試)⁽³⁾는 前段階의 會試에 合格한 生員 進士를 式年 前年

(4) 陞補는 開城留守와 濟州牧使가 施行하는 것도 있었음.

(5) 차차 進士가 士人의 荣稱으로 普遍化되자 따침내 生員은 士子의 年老者를 通稱하는 말이 되어서 一般으로 稱呼되기를 싫어하게 되었다.

(6) 보통 文科의 初試라 하는 것은 小科의 預試인 監試初試를 말하지만 講經으로써 하는 大科의 預試에 東堂初試가 따로 있었다. 그 試官은 처음에는 觀察使가 臨時하여 無故文官中에서 指名하였으나 뒤에는 서울에서는 正三品 以下官 三員이 試取하고 司憲府監察이 監督하였으며 地方은 各道都事 評事 또는 京試官이 試取하고 文臣守令 二員이 參試官으로 參加하였다. 그리고 大小의 科舉보이는 處所即場 또는 場中은 대개 二·三處로 하여 試官으로부터 嫌避理由 있는 者가 便利한 處所를 選擇할 수 있게 하였다. (經國大典 禮典諸科 pp. 209~208)

秋漢城府와 八道에서 地域別로 觀察使 主宰下에 施行한 試驗으로서 進士, 生員 어느科든지 初試에는 다 三次의 考試를 치러서 成績을 定하였던 바 이것을 三場이라고 하였고 三場에서 考試하는 科目은 時代에 따라 若干의 變動이 있었다.

經國大典⁽⁷⁾ 乃至 大典會通에 나타난 李朝一代의 通制에 의하면 大體로 進士科製述試의 初場에서 五經四書의 疑義論三者中의 二篇, 中場에 賦·頌·銘·箴·記五者中의 一篇과 表·箋中의 一篇, 終場에 對策一篇을 보았으며⁽⁸⁾ 生員科는 經以外에 子史도 네음으로서 講書라고 이르고 흔히 講經科라고 稱했던바 初試·覆試를 通하여 單場으로 하여 主로 四書, 五經(九書)으로서 試取하였다⁽⁹⁾.

이리하여 全國에서 340人(뒤에는 223人)을 選拔하였다. 또 大科初試에 代行하는 것으로 京鄉儒生에게 成均館 大司成이 施行하는 「通讀」이 있었으나 定員은 10人에 不過하였다.

다음 第四段階인 大科覆試(東堂覆試)는 大科初試의 合格者를 式年 봄에 漢城에 모아 禮曹의 主宰下에 施行하며 여기서 製述科는 初場 없이 中場과 終場에서 初試의 것을 한번 더 보며 明經科는 單場으로 하여 初場에서는 四書三經으로 講書하되 志望에 따라서는 餘二經이나 子史等書로서 代하기도 하였으며 兩科를 合하여 33人을 選拔했다⁽¹⁰⁾.

끝으로 第五段階인 大科殿試는 國王이 親臨한 가운데 施行하여 여기서 前記 覆試合格者 33人에 대하여 甲科 3人, 乙科 7人 兩科 23人으로 等級을 判定한다⁽¹¹⁾. 이 殿試에는 大體로 對策 表 箋 篓 頒 制 記 中의 一篇의 製述이 과해지는 單場으로서 이 大科의 及第者에게는 國王의 御賜花와 더부러 갓가지 唱榜·遊街의 祝賀行事가 이루워졌다⁽¹²⁾.

이와같이 하여 參榜한 者는 이른바 登龍門한 人生의 勝利者로서 一世의 艷羨의 標的이 되

(7) 經國大典 諸科 前揭書 pp. 209 ff. 進士科는 大體로 詩, 賦, 表, 策 等의 文藝를 그리고 生員科는 經書로 試驗하였다.

(8) 進士科試 製述即作文創作의 每場의 評點은 9等級으로 하여 上之上을 9分으로 하고 以下 順次遞減하여 下之下를 1分으로 하였다(經國大典, 前揭書 p. 207).

(9) 經國大典 禮典講書 前揭書 pp. 207~208 參照. 生員科 講書評點等級은 優等을 通(二分) 中等을 略(一分) 劣等을 粗(半分)로 表示했고, 句讀과 訓釋이 모두 差誤가 없고 講論이 비록 通은 못되나 一章의 大意를 理解한 者를 粗라하고 句讀과 訓釋이 모두 分明하고 大意에도 通達하고 있으나 能 通하지 못한 者를 略이라 하고 句讀, 訓釋에 모두 精熟하고 글의 趣旨에 能 通하고 辯說함에 疑問이 없는 者를 通이라고 하였다. 이 評點法은 寫字, 譯語 등 試取에도 適用된 바 大科初試에서는 9書에서 모두 通, 略以上이면 合格이었다.

(10) 이 覆試의 試官은 從二品以上官 三員과 正三品 以下官 四員이 試取하고 司憲府, 司諫院에서 각 一員이 監督한다(經國大典 前揭書 禮典諸科 pp. 211~212).

(11) 大科 殿試의 試官은 議政一員과 從二品以上 二員을 「讀券官」으로 正三品官 以下 四員을 「對讀官」으로 한다.

(12) 新恩 또는 新來 即 新及第의 榮典은 國家的 社會的 乃至 家庭的으로 極盛을 이루웠다. 즉 殿庭에서 唱榜하는 날에 新恩이 웃짓을 이어 御前에 謹拜謝恩하면 王으로 부터 紅牌(大科及第者에게 주는 紅紙에 쓴 合格證書, 小科한 이에게 주는 白牌와 對照됨)과 함께 帽花를 下賜하시니 이것을 御賜花라 하였고 이어 3日 또는 5日間의 榮華燦爛한 遊街 곧 市街行進과 親感知舊의 訪問을 시켰다. 그리고 新及第가 地方人인 경우에는 到門이라 하여 그 歸鄉日에 그곳吏民의 歡迎裡에 拜父母 謌文廟 遊街等을 하였고 다시 擇日하여 公費로서 樂舞를 갖추어 先基參拜를 하게 하였다. 崔南善, 「朝鮮常識」前揭書 p. 140.

며 이들 新及者 中 甲科의 第一人은 「壯元」이 라 하여 從六品, 甲科의 第二人은 「榜眼」 甲科의 第三人은 「探花」라 하여 각각 正七品 그리고 乙科는 正八品 丙科는 正九品의 品階를 주어 充員한 同時에 앞으로 在職官僚로서 升進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相應한 加階로서 特惠를 附與한 것이다⁽¹³⁾.

以上에서 우리는 正規的인 式年試와 特히 그중에서도 가장 重視되었던 文科에 屬하는 正規科試의 節次에 關하여 論하였다. 이 時代에는 勿論 式年試의에 여려가지 臨時 不定期의 科試도 있었는데 첫째로 正規以外에 國家의 慶事때 마다 隨時 施行하는 所謂 慶科가 여려가지 있었다. 가령 即位, 嘉禮, 元子誕生등 大慶 및 累慶이 있을 때 特設하는 것을 增廣試⁽¹⁴⁾ 라 하고 그보다 적은 慶事로 施行하는 것을 別試⁽¹⁵⁾ 라 하고 그보담도 小慶의 時에 殿庭에서 施行하는 것을 庭試⁽¹⁶⁾ 라 하고 그리고 國王이 昌慶宮의 春塘臺에 親臨하여 科試하는 春塘臺試(宣祖 5年特設)등이 있었다. 이들 科試의 内容과 節次는 대강 式年과 같았다. 慶科는 뒤에 이르러 크게 濫發되어 거의 年年 或은 一年數次까지도 施行되는 일이 있었다. 이밖에 特히 成均館 및 四學의 儒生을 應試資格者로 하여 特旨로서 施行하는 所謂 洋製라는 科舉가 있었으니 國王이 文廟에 參拜하는 날 成均館에서 施行하는 것을 謁聖科試(太宗 14年 始設) 라 하고 隨時의 理由로 特히 試題를 주어 應試케 하는 特科를 館學儒生應製(略하여 應製) 라 하고 名節(正月八日, 三月三日, 七月七日, 九月九日等)에 特試하는 科舉를 통털어 節日製라 하고 每年末에 濟州에서 進上하는 黃柑이 珍貢이라 하여 이를 館學儒生들에게 頒賜하는 同時에 科舉를 特設하여 黃柑製라 하고 또 每年 春秋에 居齋學生으로써 成均館食堂出席의 成績을 가려서 一定한 出席記錄에 到達한 者에게 보이는 到記科(泮製라고도 하여 中宗 28年에 始設)等이 있었는데 이러한 特設科도 대강 慶科와 같았고 모두 館·學儒生에게 科試하는 大科殿試와 同格의 것이었으나 때로는 館·學儒生 이외의 士子를 이에 參加케 하는 特例를 두어 이를 通方外라 하였다. 그밖에 서울에서 隔遠한 地方의 儒生을 相對로 地方別로 科試를 實施

(13) 이들 新規及第者は 각기 品階에 따라 成均館, 承文院, 校書館등의 臨時職으로 任用하며 元有階者 即 既成官僚로서 升進을 위하여 應舉入格한 者는 甲科 第一人은 加4階甲科 第二, 三人은 加3階, 乙科는 加2階 丙科는 加1階한다(經國大典 吏典, 諸科 前揭書 p. 156).

(14) 增廣試는 太宗元年に 始設되어 본래 登極慶이라하여 國王의 登極에 즈음하여 即位元年 혹은 二年에 施行한데 그쳤으나 後代에 이것이 擴大되었다. 增補文獻備考 選舉考六, 古典刊行會, pp. 200 ff.

(15) 別試는 世祖二年에 始設되어 世子誕生, 入學, 冠禮, 冊封등 國慶의 경우나 혹은 人材登用을 위하여 臨時로 實施된 것이여서 이 역시 뒤에는 점차로 擴大되었다. 人材登用의 別試는 特定地方에서 實施된 일이 많았다. 가령 世祖五年 平壤別試, 世祖六年 江陵別試, 同九年 溫陽別試등이 그 예이다. 前記 增補文獻備考選舉考六科制六 p. 201.

(16) 庭試는 國王의 親臨으로 殿庭에서 施行하는 人材登用의 一便法으로써 시작되어 中宗 37年, 明宗 14年, 宣祖 16, 27, 29, 30, 32, 36, 38年 光海君 10, 11, 12, 13年 仁祖 1, 2, 3, 5, 7年 等에 빈번히 施行한 記錄이 있으며 뒤에는 一種의 慶科와도 같이 一年에 數次까지도 施行되었고 親臨이 없이 施行되기도 했다. 前揭 增補文獻備考 古典刊行會 pp. 203~207.

하는 外方別科 또는 道科가 있었으며⁽¹⁷⁾ 또한 人材登用을 위하여 一時的으로 實施한 拔英試登俊試 進覽試⁽¹⁸⁾ 賢良科등이 있었고 또 特殊人에 局限되는 宗親科 忠良科 耕蠶科 書老科⁽¹⁹⁾ 등이 있었는가 하면 經書의 講讀을 勸獎하기 위하여 成宗朝에 特別히 設置된 考試로서 儒生殿講이 있어 이는 每式年에 專經文臣을 選拔하여 각각 一經을 專攻케 하고 이들로 하여금 각금 御前에서 講論케 한 것이다. 또한 科舉에 及第한 者의 繼續 精進을 激勵하기 위하여 施行한 特別考試로서 重試가 있었는데 이는 麗朝에 비롯된 것이지만 朝鮮朝에서는 世宗 9年(1427)에 特히 文武科初重試의 法을 制定 實施한 바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文學의 才의 培育과 文臣의 能力增進을 促求할 目的으로 正祖는 所謂 抄啓文臣親試制를 設置하여 37才以下의 堂下文官(6品以上及以下官)중에서 文學이 뛰어난 사람을 選拔하여 매월 講讀·製述의 試験을 보게하여 그 成績에 따라 進級과 陞職 other의 賞典을 준 바 있었다⁽²⁰⁾.

- (17) 外方別科는 主로 西北兩道와 濟州 또는 江華等地에 特旨있을때 施行하였다. 重臣을 派遣하거나 혹은 그 道의 監司에 命하여 舉行케 한 것이다. 北科는 吉州, 西科는 安州에서 보임이 通例이었다. 本來 일직이 人心을 사기위하여 王의 巡幸地에서 科試를 特設한 前例가 있었으며(例컨대 世祖께서 平壤, 江陵, 温陽 그리고 宣祖께서 義州, 海州 그리고 仁祖께서 江華등에서) 또 朝廷의 紀念할 行事가 있는 경우에 該地方에 設科하기도 했다(例컨대 光海 6年 慶基殿 重建時に 全州, 仁祖 7年에 太祖影幘改繪의 奉安地인 江陵, 永興, 平壤등지에) 그러나 이와같이 州郡別로 實施하지 않고 諸州郡을 一括해서 道單位로 特別한 科舉를 보이기는 仁祖 21년에 大亂後 人心慰悅策으로 平安道의 儒生을 위하여 往試한 것이 道科(關西)의 始作이며 孝宗 4年에는 關北道科를 始設했고 顯宗 5年에는 御史를 濟州로 보내어 民情慰問과 함께 施設한 것이 濟州道科의 始初이었다. 崔南善著, 朝鮮常識, 前揭書 p. 131.
- (18) 李朝初期에는 人材養成에 注力한 바 많았다. 世宗朝에 이미 重試라 하여 科舉에 及第한 사람에게 다시 試験을 科하여 이 試験(重試)에 及第한 사람을 堂上 正三品의 品階로 올려 줌으로서 卑級文臣을 勸獎한바 있었거나와 經國大典乃至 大典會通에 「文科, 十年一重試, 堂下官 許赴, 額數及試法, 臨時稟旨, 武科同」이라 하여 世宗朝에 重試를 始設할 때에는 每 10年 1次 丁年으로써 施行하더니 後에는 丙午으로써 例를 삼았다. 뒤에 世祖代에는 다시 一步를 내켜서宰相, 宗親에게도 實力再練成에 精進할 科試를 課하였으며 가령 世祖 12年(1466) 5月에 所謂 拔英試를 베풀고 文臣 正二品以下 百餘名으로 하여금 應試케 하여 그中 34名을 合格시킨 일이 있고 同年 7月에는 登俊試를 베풀고 일직이 前例가 없었던 公卿, 宰輔乃至 宗親까지의 高官들의 志願者를 모두 應試케 하여 高官厚錄者들이 學問에 계올리 하여 文風이 不振하기 때문에 此試験을 設行하니 奎發하라는 教旨를 내리고 筆題에 대한者 30餘名中에서 金守溫등 12名을 뽑아 이들을 格別히 內庭으로 召見하여 각자 獲榮의 典을 베푼 일이 있었고(英祖 50年 勸政殿舊基에도 實施됨) 成宗 13年(1482)에 進賢試를 設行한 것도前述한 趣旨에 依한 것이다. 한편 賢良科는 中宗朝 趙光祖의 理想政治具現을 위한 改革의 一環으로서 從前의 科舉밖에 새로 新設된 考舉에 의한 任用制로서 中宗 13年(1518)에 特敎로서 才行兼備可用之人을 널리 살펴서 京城에서는 四館, 成均館, 中樞府, 六曹, 漢城府 弘文館으로부터 地方에서는 留鄉所, 本邑, 監司의 다리를 밟아서 자기 禮曹로薦報하면 禮曹에서는 그 姓名, 行實을 聞列하여 議政府를 거쳐 이를 奏聞케 하였고 이렇게 하여 薦報된者(120人)를 宮中으로 모아 (己卯四月) 王이 勸政殿에서 親히 問題를 내어 試験한 일이 있었다(28人選拔).
- (19) 宗親科는 政治에 關與치 못하게 한 王室 全州李氏의 宗親에게 그禁을 緩和하여 施行한 것으로 式年 翌年에 實施하였으며(世祖朝에 始設) 忠良科는 委亂後에 歸化한 明遺民의 子孫과 胡亂에 抗淸死亡한 者의 子孫을 위하여 英祖 40年(1764)에 特設한 科舉이며 耕蠶科는 英祖 43年에 坤殿(王后)이 王과世子와 더불어 親耕禮를 行한 것을 紀念하기 위하여 設科한 것이며 書老科는 朝廷에 壽慶이 있을 때 가끔 施行된 科試로서 그 始初는 英祖 32年에 母后的 七旬과 上壽의 望七(61歲)을 祝하기 위하여 특히 文武 60以上老人을 應試케 한해서 비롯하였다. 以上的 諸科는 大體로 그 範圍가 局限되어 國家의 常典이 아니다.
- (20) 奎章閣志卷二 教習篇 參照.

講書를 과하고 試官은 三人으로 하되 그중 武官 2人 文官 1人으로 하였다.

覆試는 式年봄에 初試合格者를 中央에서 兵曹와 訓練院의 主宰下에 會試하여 28人을 選拔하는데 여기서는 初試와 同一한 武藝와 그밖에 講書로서 兵政·陣法·兵將說 중의 一書 武經七書중의 一書 또는 其他의 兵要등 六書중의 一書를 自願 選擇하여 試験한다.

그리고 마지막 殿試는 覆試合格者 28人을 騎擊毬, 步擊毬로써 甲科 3人, 乙科 5人, 丙科 20人으로 席次를 매기는 科試로서 武科合格者를 武科「出身」이라 하였다. 그리고 武科에도 前記한 式年試 以外에 增廣, 別試, 庭試, 謁聖試, 春塘臺試, 外方別科 등의 臨移科試가 있었고 또한 科擊以外의 武科系의 取才로서 武科에 應試하기 위한 取才, 武科出身을 官職에 任命하기 위한 取才, 解官된 者를 再任命하기 위한 取才, 傅祿없는 軍官에게 祿을 주기 위한 取才등 여러가지가 있어 武系官僚의 新規採用과 升進 나아가서는 이들의 武藝鍊磨와 士氣振作을 꾸하는 各種 科試와 取才가 있었다.

끝으로 三科中의 마지막 雜科도 大·小科의 區別이 없는 第一科로서 初試, 覆試의 二段階로 科試하였으며 當時代에는 많은 技術職官僚가 必要치 않았기 때문에 式年試 이외에는 增廣試가 있었을 뿐이었는데 初試는 式年前年秋에 서울에서 關係各司의 主宰下에 施行했으며 覆試는 이를 關係各司와 禮曹가 合同으로 擔當하였다. 그 科目은 勿論 專門에 따라 달랐으며 雜科의 種類와 採用人員 및 主管官衙는 다음과 같았다⁽³⁰⁾.

(雜科種類)		初試				覆試				科目的	
		人員	主管官衙	科目	人員	主管官衙					
譯科	漢學	23	司譯院				13				
	黃海 平安	7 15	觀察使	漢學, 四書, 其他語學書		禮曹와 司譯院 共同管理				初試와 同	
	蒙學	4					2				
	倭學	4	司譯院				2				
醫科	女眞學(後의 清學)	4					2				
	醫學	18	典醫監	醫書講書		9	禮曹와 典醫監 共同管理			初試와 同	
	天文學	10				5					
陰陽科	地理學	4	觀象監	天文書講書		2	禮曹와 觀象監 共同管理			初試와 同	
	命課學	4				2					
律科	律學	18	刑曹	大明律等 講書		9	禮曹와 刑曹堂 上官共同管理			初試와 同	

한편 雜科系에도 缺員을 補充하고 또는 升進을 시키기 위한 取才制가 正式雜科와는 別途

標準距離를 超過하면 每 5步에 1點씩 加算하고 1矢以上이 得點하면 合格한다. 또 片箭은 短小한 花槍로서 一矢가 標的에 到達하면 15點 과녁(貫)을 맞추면 倍點을 준다. 그리고 이외로 騎射, 騎槍, 撃毬 및 大典會通에 記錄된 貴革, 柳葉箭, 鳥銃, 鞍鉤등 武藝試驗이 있었다. (經國大典兵典試取前揭書 pp. 377~388. 大典會通四試取前揭書 pp. 210~211.)

⁽³⁰⁾ 經國大典, 禮典, 諸科, 前揭書, pp. 215~222. 參照.

로 年四次 各司와 禮曹에 의하여 施行되었는데 그 種類는 前記 各司의 各種類 以外에 戶曹에서 算學, 圖畫署에서 畫員, 昭格署에서 道流, 黨樂院에서 樂生 및 樂工등을 위한 取才가 있었다.

이밖에 初期에는 僧侶의 資格을 公認하는 度牒을 얻기 위한 誦經과 僧職을 주기 위한 僧科試가 있어 國家公認으로 禪·敎宗에서 獨自의으로 僧侶를 각각 選拔하였으며 科目은 禪宗 및 敎宗試에 따라 달리 하였고 世宗代에는 이를 各三十名으로 制限하였다.

以上 科學制度에 關하여 論하였으나 무릇 이 科學制를 採擇한 目的은 朝鮮王朝의 集權的統治體制下에서 國王은 그 自身의 補助者로서 忠誠하고 有能한 人材를 選拔할 必要가 있었으며 아울러 儒教의 洗臘作用으로 國民思想과 政治文化의 統一를 期하며 官僚의 社會的 地位의 世襲化를 防止 或은 統制하여 社會人心의 刷新을 設하는 同時に 中央集權化를 通한 王權의 強化 整備를 促進하고자 한데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科學制는 兩班에게 獨占되어 있는 儒學을 위주로 하고 더우기 性理學의 隆盛에 따른 詞章偏重의 科學試에 만 물두하고 보니 任官이 되어도 國家經倫이나 實際世務에는 어둡고 또 關心도 없이 오로지 個人과 一家의 榮達로 생각하여 特權의 行勢를 恣行하고 私利와 苛斂誅求를 일삼았으며 그위에 身分의 인制約이 엄연하여 立身立世의 길도 身分의 으로 制約되어 그것은 또한 李朝社會의 身分 體制를 硬化시킨 바 적지 않았다. 더우기 高級官僚에게는 人材를 薦舉할 수 있는 特權이 附與되고 功蔭子孫에게는 被薦의 特典을 주는 등 兩班에 依한 科學의 獨占에도 不拘하고 이같은 門閥尊重과 兩班身分層의 數的增加는 科學制의 矛盾을 增大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科學를 準備하기 위하여 李朝의 兩班들은 全的으로 生業을 廢하면서 空理空論에 물두하였으며 落第한者は 再三應試를 試圖하면서 生活費와 學費를 감당하든지 또는 斷念하여 人生의 落後者로서 墮落하였으며 合格者は 自慢하여 다시는 文藝에 專念하지 않고 學習을 게을리 하였던 것이다.

(2) 官僚의 人事慣行 및 品階——朝鮮王朝에서 特權階級視되었던 文武 兩班으로 官路에 처음나아가는 所謂 初仕(初入仕)는 本人은 물론 一門의 慶事로 크게 祝賀를 받은 것이나 이더한 初仕의 가장 正則의 길은前述한 文武의 科試에 及第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蔭職 또는 南行이라 하여 科學를 통하지 않고 入仕하는 길이 있었다⁽³¹⁾. 그 중요한 것으로 學行과 德望이 뛰어나 在朝의 高官이나 地方官의 「薦舉」⁽³²⁾를 받는 경우와 國家有功者的 子孫

(31) 增補文獻備考 職官考, 16, 東國文化社 前揭書 p. 670. 「申欽曰, 我朝取人路有三, 曰文科, 曰武科, 曰蔭職, 文科則試之以文, 講之以經, 武科則試之以弓馬, 講之以兵書, 蔭職則保舉取才, 公薦里選, 然後方許注擬, 蓋二百年不易也。」

(32) 京外의 東西班의 三品以上 官員은 每三年마다 봄의 첫달에 각각 3人을 推薦한다(3品에서 無職까지). 每年 봄의 첫달에 東班의 三品以上의 官員과 兩班의 二品以上의 官員은 각각 守令이나 萬戶가 될만한 資格者를 推薦하되 모두 3人을 넘지 못한다. 被薦任官者가 萬若犯罪時는 推薦者도 함께 連坐한다. 每年 봄의 첫달에 議政府와 六曹의 堂上官과 司憲府, 司諫院의 官員은 각各 觀察使 節度使가 될만한 資格者를 推薦하고 忠勳府에서는 功臣의 子孫으로서 官員의 任務를

以上 論及한 定期的 및 臨時不定期의 科試와 그리고 各種의 特別科試들은 朝鮮王朝의 支配「엘리트」인 兩班官僚를 政治的으로 任用하는 試驗으로서 重視되었던 것이다. 特히 尚文主義에 依하여 重視된 文科의 應試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嚴格한 資格制限條件과 아울러 身分上의 制限이 加해졌던 것이다.

우선 經國大典에 의하면 犯罪者와 濟職官吏의 子 및 再嫁, 失行婦女의 子 또는 孫 그리고 庶子孫等은 文科의 生員·進士試에 應試할 資格이 없었으며⁽²¹⁾ 身分上의 亂 制限으로서 生員·進士科와 文科는 兩班以外에는 原則的으로 應試資格이 있었던 것이다⁽²²⁾.

다만 科舉와는 區別되는 官員登用을 위한 特別試驗으로서 取才라는 制度가 있었는데 이것만은 兩班의 末流인 蔭子弟⁽²³⁾와 京衙前인 錄事⁽²⁴⁾ 書吏⁽²⁵⁾ 등 一定한 身分을 가진 者를 위하여 制限된 官員에 登用 또는 採用시키는 길이 되었다. 한편 取才로서 守令에 任用하는 경우에는 四書, 一經, 大明律 및 經國大典의 講과 活民方略의 製述를 課하였으며 地方官司의 教官職과 衙前身分인 驛丞, 渡丞 및 書題⁽²⁶⁾ 등을 任用하는데도 取才가 있었다.

무릇 朝鮮王朝 科舉중에 가장 重視되었던 文科考試에는 크게 新規採用考試와 現職官僚가 應舉하는 升進考試가 있었고 또한 薦舉制과 그리고 正規科舉와는 區別되는 特別 人材登用方法으로서 取才等이 있었다. 이로서 보건대 人事制度가一般的으로 社會身分에 따라 嚴格히 制限된 封建主義의 資格任用制度를 土臺로 하면서도 여러가지 誘因(incentive)에 의한 積極

(21) 經國大典, 禮典, 諸科 前揭書 pp. 207~208.

(22) 繢大典 卷之 3, 禮典, 諸科, 法制處編, 1965. (法制資料 第 19 輯). p. 124. 科場(文科의 경우)에 胃入하여 代寫한 경우에는 良人이면 水軍에 充定하고 公私賤이면 絶島의 奴隸로 한다 등등 參照. 그러나 武科의 경우는 그 制限이 상당히 緩和되어 賤人만이 그 資格이 없었고 繢大典 兵典 武科 「應舉者와 그 保證推薦者는 모두 有職人으로서 登錄하여야 하며 諸賤人에 대하여는 胃赴를 許容하지 아니한다」 參照. 한편 雜科는 그 職業上の 技術이 一定한 身分과 關聯되어 있었으므로 大體로 그 範圍에서 應舉하였다.

(23) 蔭子弟는 父祖의 德澤으로 科舉에 合格하지 아니하고 官員에 登用될 길이 있는者로서 功臣 및 二品以上 官員의 子, 孫, 婦, 弟, 媞과 三品官의 子, 孫과 일찌기 吏曹, 兵曹, 都摠府, 司憲府 司諫院, 弘文館의 官員과 部將宣傳官을 지낸 者의 子로 20 歲以上된 者에게 試驗을 許하고 (試驗은 每年正月에 施行한다) 合格한 者는 任用한다. 또 錄事が 되고자 하는 者가 있으면 聽許한다(經國大典 吏典取才, 前揭書 p. 153).

(24) 錄事 및 書吏는 京官職의 各官司에 配置되는 下級官員인 吏胥로서 그중 錄事는 議政府와 中樞府에 分屬되어 각己 東班과 西班의 各官司에 分定派送 配置한다. 錄事取才是 每年正月과 七月에 講(五經中 1, 四書中 1의 經書와 經國大典, 大明律), 製述(文書의 作成) 글씨, 算術등에 대하여 試驗을 行하여 採用하고 在職期間 514 日이 되면 品階를 加하되 從六品에서 官職을 떠난다. 去官後에 守令採用試驗에 合格한 者는 任用한다.(經國大典 吏典 京衙前 前揭書 p. 141)

(25) 京衙前의 一種으로서 書吏取才是 每三年마다 각 고을의 校生(鄉校의 儒生)으로서 壯年이고 才智가 低能한 者中에서 楷書와 行算을 試驗하여 採用하여(大典通編에는 廢止) 在職期間 2600 日이 되면 堂上官이 있는 官司에서는 從七品, 三品以下의 官員이 있는 官司에서는 從八品의 品階를 받고 官職을 떠난다. 去官後에는 驛丞, 渡丞의 試驗에 合格한 者는 任用한다(經國大典 吏典, 京衙前 前揭書 p. 143).

(26) 書題는 衙前의 一種으로서 寫字生이며 驛·渡丞과 더불어 取才試驗科目은 講의 經國大典, 製述에 啓本(王에게 提出하는 文書) 牒呈 또는 牒報(上官에게 報告하는 文書) 關文(上官이 下官에게 보내는 公文書)中에 하나를 그리고 楷書와 行算을 과하였다.

의人事制度를 試圖한 것으로 본다. 첫째로 新規採用試에는 이 時代의 科舉制의 根幹을 이루었던 小科 및 大科의 正規的 文科가 있었고 아울러 國家慶事에 隨時로 施行된 廣科(增廣, 別試, 庭試, 春塘臺試等)와 洋製(謁聖科, 應製, 節日製, 黃柑製, 到記科等) 그리고 經書講讀의 勸獎을 目的으로 施行된 儒生殿講 나아가서는 면 地方의 儒生을 위하여 또는 地方民心의 收攬을 위하여 試取한 科試로서 道科 또는 外方別科等이 있었으며 아울러 兩班의 末流나 京衙前등 一定한 身分을 가진 者中에서 人材登用을 위한 試驗으로서 取才가 있었다.

둘째로 現職官僚로 하여금 應舉하게 한 昇進試驗으로서는 우선 重試가 있었는데 이것은 卑級文臣의 實力再練成을 위한 勸獎과 人材登用뿐만 아니라 宰相 및 宗親등의 繼續精進을 激勵할 目的으로 設置된 것으로서 拔英試, 登俊試, 進賢試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特殊階級에 대한 制限特科로서 宗親科, 忠良科, 耕蠶科, 書老科등이 있었는가 하면 文學의 人材의 培育을 目的으로 設置된 抄啓文臣親試가 있어 여기에 及第한 者는 特別昇進 또는 特別補職시켰던 것이다.

셋째로 薦舉制에 의한 人材登用制로서 賢良科를 들을 수 있겠는데, 이 制度는 用人의 方法으로서의 試驗制의 不完全性과 또 經驗上 科舉의 弊害를慨嘆한 나머지 採擇한 것이며 앞에서도 論及한 바와 같이 中宗朝에 趙光祖에 의한 理想的政治改革의 一環으로 實施된 것이었다. 趙光祖와 賢良科의 被選者들은 當時 바야흐로 新政治의 推進力으로서 自他의 期待가 커지마는 마침내 한해도 디쳐 못되어 이들 一派는 反對黨의 誣陷으로서 敗退되고 따라서 賢良科自體도 罷棄되었다. 그러나 마침 仁宗(1545)朝에는 賢良科의 及第資格만은 復舊시키게 이르렀던 것이다. 이로서 보건데 國出의 用人을 薦舉를 主로 할것인가 또는 試驗을 主로 할것인가 하는 人事制度上의 問題는 古來로 論議의 對象이 되어온 것으로 推測이 된다⁽²⁷⁾.

다음武科試는 앞에서도 論及한 바와 같이 大科 小科의 別이 없는 單一制였기 때문에 初試 覆試 殿試의 三段階가 있었는데 初試는 式年 前年가을에 中央은 訓練院에서 70名(院試), 地方은 各道兵使主宰下에 全國에서 120名(鄉試)⁽²⁸⁾을 試取하되 主로 各種 實技에다⁽²⁹⁾若干의

(27) 薦舉制에 關해서는 蔭職 또는 南行이라 하여 科舉를 통하지 않고 官路에 나아가는 正式의 規定이 있었는데 이에 關해서는 다음 「官僚의 人事慣行」에서 論하였다거나와 이 경우 科舉를 통하지 않는 薦舉制에서도 推薦된 者가 일직이 科舉나 試驗을 通過하였거나 이미 六品以上の 顧官을 지낸 者以外에는 四書中一書와 五經中一經을 自願에 따라 簡單한 試驗을 치러서 選拔했던 것이다(經國大典 兵典, 薦舉 前揭書 p. 155).

(28) 經國大典 兵典, 試取, 前揭書 pp. 376~377. 大典會通四, 武科式年, 朝鮮古書刊行會發行 大正二年 p. 211. 鄉試는 慶尙道 30人, 忠淸, 全羅道 각 25人 江原, 黃海, 永安, 平安道 각 10人(大典會通에는 각 20人으로 되었음)의 定員을 試取하였다.

(29) 實技로서는 우선 步射라 하여 從步로 달리면서 활을 쏴서 화살이 一定한 標準距離以上에 到達하고 또 標的에命中 또는 接近하는 程度를 보는 武術試驗으로서 木箭은 240步 밖에서 鐵箭(6兩重)은 80步 밖에서 片箭은 130步 밖에서 發射하되 각己 探點方法이 다르다. 가령 木箭의 경우는 矢三發을 使用하는데 一發이目標까지 미칠 때마다 7點을 주되 240步를 지나면 超過하는 5步마다 一點을 加點하고 50步를 지나면目標밖에 떨어졌더라도 點數를 준다. 前目標의 左右距離은 70步이며 前目標와 後目標와의 距離는 50步이다. 鐵箭은每一矢가 標的에 到達하면 7點

이나 宮廷의 親戚關係 또는 其他理由로서 特別任用되는 「門蔭」⁽³³⁾과 그리고 南行과는 區別되는 것으로서 專門別 技術職 또는 雜職에 特殊人物을 昇級任用하는 「雜流」(또는 雜路) 등이 그것이며 이들의 任用方法과 昇進品階에는 여러가지 制限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蔭職의 入仕者數는 漸漸 많아져서 文科를 통하는 數를 凌駕하였으며 特히 中期以後에 科舉가 公正性을 잃게 된 뒤로는 도리어 蔭官의 人材가 많은 경우조차 있었다.⁽³⁴⁾ 이리하여 朝鮮의 官職은 文 武 蔭으로 大別되는 것이었다.

官僚될 適格者를 選拔 任用하고 在職官僚의 成績에 따라 昇任 轉任을 決定하는人事行政을 高麗의 傳統을 이어 朝鮮에서도 都目政事⁽³⁵⁾라고 하였으며 大體로 官僚의 在職年數와 勤務評定에 따라 每年 6月과 12月에 兩次에 王旨를 물어 人事措置를 行하는 것이 慣例가 되었다. 即 每年 6月과 12月 兩次에 官吏 1年間의 成績考查表인 「都歷狀」을 土臺로 文官은 吏曹에서 武官은 兵曹에서 각己 判書以下の 責任者들이 合同하여 審議한 結果에 따라 選任과 昇任을 行하는 것을 都目政事라고 불러왔으며 이 兩次의 都目時期以外에는 비록 空席이 생겨도 重要하거나 緊急한 人事가 아닌 以上 補任하지 않는것이 原則이었고 不定期로 緊要한 補任을 行하는 것을 散政이라 하였다.

그리고 建國初에는 이와같은 銓選을 尚瑞司에서 擔當하다가 東·兵曹로 그 權能이 넘어갔으며 兩曹에서는 각各 文武官의 銓選을 맡아 보았기에 이 兩衙門을 「銓曹」라고 하였다. 銓曹에서 銓選을 함에 있어서人事行政의 慎重을 期하기 위하여 君主의 親裁下에 吏兵曹가 合席考查하는 所謂「親臨都政」이란 特別한 慣行도 있기는 하였지만, 大概의 경우 銓曹의 各判書以下の 責任者들이 會同하여 都歷狀에 의하여 審議한 結果, 官職마다 거기에 適格한 者所謂「望에 든이」들中에서 候補者로 3人씩을 選拔하고, 그 姓名을 列錄하여 王에게 奏聞하도록 하였으니 이것을 「備三望」이라 하였다.⁽³⁶⁾ 이러한 모든 名錄을 함께 國王에게 捧呈하면 國

담당할만한 才質있는者를 推薦한다. 무릇 推薦된者は 일직이 科舉나 試驗을 通過하였거나 이미 六品以上の 顯官을 지낸者以外에는 四書中一書와 5五經中 1經을 自願에 따라 選擇하게 하고 試驗하여 뽑는다. 그리고 辞令狀을 回收 當한者와 龍免된者は 每年 겨울과 여름의 끝달에 罪名을 具申하여 王에게 上奏한다(兵曹에서도 같다)(經國大典, 吏典, 蘭舉, 前揭書, pp. 155~156) 각道의 前職者와 生員 進士 또는 幼學으로서 才質과 行實이 顯著한 者는 式年마다 年初에 一鄉人이 守令에게 保證薦舉하면 이를 觀察使에게 報告하고 다시 選拔하여 蘭舉한다. 但推薦書記錄이 名實相符되지 아니하거나 虛偽記錄한 경우는 論罪하고 該當 觀察使와 守令도 龍免한다(續大典, 吏典 蘭舉 前揭書 pp. 54~55).

(33) 繼大典 吏典 除授 p. 56. 文獻備考 選舉考 17. 蔭叙 前揭書 pp. 317 ff.

(34) 文科 及第者가 每三年 通計 30餘名에 達하는데 比하여 南行入仕者數는 70餘名(每年 2,30名以上으로서)에 達하고 있으며(經世遺表, 天官修制, 三班官制) 무릇 世族子弟들은 讀書에 精進하여 우선 科舉에 應試하지만 文科에 뜻을 이루지 못하면 이를 斷念하고 武科를 志望하였다. 그러나 文, 武兩科에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곧 蔭職入仕를 폐하는 것이었다.當時 文武蔭의 官職의 輕重은 이로써도 침착할 수 있는 바이나 그러나 後期에 이르러서는 文·武·兩科의 登第者로서 入仕 就職한者的 賢績이 低落하여 蔭官에 미치지 못하게 이르렀다(文獻備考 職官考 16).

(35) 略하여 都目, 政事, 都政, 王는 大政, 開政, 京察, 注擬, 銓注, 銓選등이라 이르렀다.

(36) 略하여 「備望」 또는 「望에 든이」라고 이르고 그 推薦名錄을 「望單子」「望記」 또는 「望符」라고도 하

王은 三望中의 一人에게 點을 쳐서 最後의 決定을 내리는데, 이것을 「落點」 또는 「批下」라 하여 이대로 官報(朝報)에 公表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官纖에 대한 任命節次는 이로서 그치지 아니한다. 이와같이 一旦 吏曹 또는 兵曹로부터 官吏로 除授된 者는 그 身分上의 適格與否를 審查하는 「署經」이라는 節次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即 堂下官의 任命이 있으면(堂下官은 肅拜時에 곧 바로 任命狀이 傳給되기 때문에 免除) 吏兵曹에서 當事者の 内·外·妻三族의 四祖(父·祖·曾·外祖)를 列記하여 司憲府와 司諫院으로 보내고 이兩司에서는 當事者와 三族四祖에 瑕疵가 없음을 判定한 후에 認准하는 것이다. 이 署經이라는 節次가 完了되어야 任官이 비로소 確定되고 또 吏兵曹에서 職牒 또는 告身이 비로소 發給되는 법이다. ⁽³⁷⁾

이들 司憲 司諫 兩司의 官員과 守令의 署經은 더욱 慎重과 嚴格을 期하고 비록 守令으로 署經을 치른 者라도 監察에 任命되는 때에는 監察로서의 署經을 다시 받아야 하였다. 무릇 署經은 第一次審查에 不通過(見越)가 되면 再署를 求하고 그래도 見越하면 三署를 求하였다가 三署에서도 見越하면 遷任換言하면 職務가 바뀌었다.

이와같은 節次를 밟아 官職에 任命되면 東班九品·西班牙四品 以上職을 받은 者는 出任에 앞서서 任命日 다음날에 宮中에 들어가 大殿 王妃殿 王世子宮등에게 感謝하는 禮를 밟아야 하니 이른바 「謝恩肅拜」가 바로 그것이다. ⁽³⁸⁾

그리고 新任된 中央과 地方의 堂下官과 出使者는 十日 以内에 議政府 吏曹(또는 西班 四品以上은 兵曹)과 屬曹等 監督官廳에 몸소 들려 선을 보인다. 이節次는 一種의 人物考查를 받는 것으로 「參謁」 또는 「歷辭」라 하였다. ⁽³⁹⁾ 特히 새로 任命된 監司·守令·兵水使 以下 文武官의 外職에 대하여는 이 考查節次는 더 慎重 嚴格히 하는 意味에서 赴任에 앞서 辭朝함과 함께 國家의 重臣과 및 關係官衙의 要人과 그리고 監督權을 가진 兩司官員을 歷訪告

였다. 그리고 不得已한 變通으로서 三望을 備할만한 候補者가 없기 어려운 때에는 1,2人만을 골라내기도 하여 이를 各己「二望」 또는 「單望」이라 하였으며 특히 「長望」이라 하여 人材를 넓히 求할 必要에서 三人以上의 多數候補者를 選定하는 일도 있었다. 또한 臨時事情이 아니고 그 性質上 「單望」으로 任命하는 자리를 「單付」라고 하였다(崔南善著 朝鮮常識 前揭書 p. 145). 이와같은 慣行은 候補者의 成績 또는 資格과 任命權者의 裁量을 함께勘案하려는 任用節次로서 오늘날의 3倍數 推薦制(rule of three)등과 一脈相通하는 바가 있었던것 같으나 事實은 運營上 特權官인의 情實과 恣意에 의한 不公正한 人物評定으로 弊害가 컸다.

(37) 官員任命의 辭令狀을 職牒 또는 告身이라 하며 4品以上은 教旨 5品以下是 牒紙 또는 教牒이라고 하며 그 名稱과 形式이 品階에 따라 一定하지 않았다. 職牒은 官職의 任命狀인 同時に 官吏의 身分保障書가 되었으며 따라서 罪를 犯하면 「奪告身」 또는 「收職牒」이라하여 職牒를 빼앗아 地位없는 者로 만들었고 罪狀에 따라 어느 期間을 지나워에 減等 또는 回復시켰다. 또 이를 紛失한者は 吏, 兵曹에 申告하여 證明書를 交付받게 하였다. 「經國大典 吏典 兵典 告身 前揭書 p. 158 p. 437 및 禮典告身式 pp. 309 ff. 參照」.

(38) 肅謝라고도 하며, 이는 「加階」나 兼職의 경우에는 大殿에만 肃拜하며 또 「出使」나 「受假」등의 경우는 下直, 入來時에 모두 肃拜한다(經國大典 禮典 朝儀 前揭書 p. 268) 그리고 大君, 王子, 王孫, 大臣 및 國舅등은 殿庭에서 肃拜하고 (他官을 隨行함) 山林, 承史, 閣臣, 儒臣등은 閣門內에서 其他官은 閣門外에서 肃拜하여 모든 肃拜는 四拜하는 것이 內規였다.

(39) 經國大典 禮典 參謁 前揭書 p. 297.

辭케 하여 은근히 그들로 하여금 선눈을 밝히게 하는慣例가 있었던바 이것을 歷辭라고 하였으며, 이경우에 重臣 上官들이 必要한 注意와 付託을 하는 것이 通例로 되어 있고 萬一, 絶對로 不適任者로 鑑定하는 경우에는 혹 은밀히 그의 赴任을 沮止하는 일도 있었던 것이다.⁽⁴⁰⁾ 이와같은 歷辭의 慣行은 많이 오늘날까지도 繼承되고 있다고 본다.

한편 官僚의 職品(또는 官階)을 보건대 '官僚의 等級을 「品」 또는 「流品」이라 하여 正·從各九品으로 나누고⁽⁴¹⁾ 이안에 드는 官僚를 「流內」 그밖의 卑雜諸職으로서 實職 아닌 散職 影職 및 雜職 등을 流外라 하였다. 이 18品 가운데 文官 四品以上을 「大夫」 五品以下를 「郎」 그리고 武官二品以上을 「大夫」 三·四品을 「將軍」 五六品을 「校尉」 및 七品以下를 「副尉」라고 각각 呼稱했다.

그리고 李朝의 官品은 正·從各9合 18品을 準則으로 하지만 從六品以上에는 各品에다 上·下階를 두고 正一品에는 特히 三階가 있음으로 實際上 24乃至 5의 階가 있는 셈이었다. 그리고 또 全系列中에 몇個의 層殷이 있어 각각 官位의 尊卑를 表示했던 것이다. 堂上, 堂下 및 參上·參下가 그것이다. 堂上官은 正三品 上階(通政大夫 또는 折衝將軍)以上을, 堂下官은 正三品下階(通訓大夫 또는 禦侮將軍)以上을 그리고 參上官은 從六品以上을, 參下官(또는 參外)은 正七品以下로 區分하고 禮遇上의 差等을 하였다. 특히 堂上官이 되면 公私交際上에 「守監」이라는 敬稱을 받게 되고 正二品以上을, 「大監」이라 呼稱하니 國王의 呼稱인 「上監」에 벼금되는 것이었다. 또 堂下官은 網巾의 貫子를 黑角을 쓰던것을 堂上官이 되면 玉貫子(從二品에서 金貫子 正二品以上에서 還玉 即 玉貫子를 붙이다)를 써서 榮貴의 表象으로 삼았으며, 한편 參下로 부터 參上으로 昇進하는 것을 한 關門으로 삼았으며, 參上官이 되는 것을 「陞六」 또는 「出六」이라 하여, 이것 또한 榮達의 한 表象이 되었다.⁽⁴²⁾ 그리고 官職의 正式名簿는 「階·司·職」의 順序로 되어 例컨대 領議政은 「大臣輔國崇祿大夫(階) 議政府(司) 領議政(職)」이라 하였던 것이다. 또한 官職마다 品階가 定해져 있는 것이 原則이었으나 例外도 적지 않아서 「階高職卑」면 行이라 하고 反對로 「階卑職高」면 守라 하되, 越階에는 一定한 限界를 定했던 것이다.⁽⁴³⁾

(40) 歷辭의 範圍와 節次에 關해서 「兩銓便敍·東銓總例」 및 「六典條例, 兵曹, 總例」 등 參照.

(41) 官等을 9로 分하는 法은 支那의 周代에 1命으로 부터 9命까지로 區分함에 비롯하여 漢代에는 官에 16等, 從漢에는 13等의 別이 있었고 뒤의 曹魏의 代에 上中下 三等을 다시 等마다 上中下로 나누어서 그 一等·二等을 「品」이라 이르고 이 品에 應하여 授官하게 이르며 이로서 官이 여기 맞춰서 또한 9品으로 區別되게 이르렀으니 9品의 稱이 여기서 비롯된다 한다. 그리고 梁代에는 9品과 함께 18班을 두고 後魏代에는 9品의 品마다 從을 붙혀 凡 18品이 되고 隋와 唐代에 正從各 9品合 18等으로 하고 正四品以下の 各品에 上階·下階의 別를 두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新羅以前의 各王朝가 모두 固有의 官等名號를 쓰더니 麾朝로부터 비로소 唐宗의 官制를 모방하여 9品과 그 正從의 官品을 쓰게 되었다(崔南善著 朝鮮常識 前揭書 p. 150).

(42) 用語上 品과 質과 階는 本來 同義語이지만 慣例上 堂下官으로서 品階가 昇進함을 陞階 또는 陞品이라 하고 堂上官에서 堂上官으로 昇進함을 「加資」 그리고 堂上官내에서 一級씩 昇進함을 陞質, 加質 또는 陞秩라하여 別區別하였다.

(43) 經國大典 更典 京官職 前揭書 pp. 32~33. 「7品以下是 2階를 넘지 못하고 6品以上은 3階를 넘

한편 李氏朝鮮의 官制에서 宗親功臣의 勳爵位 또는 君・府院君稱號制를 보건대 무릇 勳官은 國家有功人에게 特別히 授與하는 官位이고 爵號는 有功者の 身分을 尊貴하게 하는 名譽의 表象이었다. 臣僚의 功勳 特히 武勳에 대하여 官爵을 特授하는 것이 三國 新羅以來로 우리나라에서 慣例가 되어왔다. 麗朝에 制定된 勳・爵制에 의하면 勳은 上柱國・柱國의 二階로 하고 爵은 公候伯子男에 依하여 다시 國公 郡公 등으로 細分하였다. 그러나 李朝 太宗元年(1401)에 明에 대하여 宗主로서 사양하는 意味에서 勳・爵制를 廢止하고 宗室의 諸公은 府院大君, 臣僚의 候・伯은 府院君 또는 君으로 改封하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爵號가 朝鮮에서 없어졌다 (다만 日帝時에는 暫時 復活되었을 뿐) 一般的으로 君・大君・院君 및 府院君의 號는 麗朝부터 存在하여 本來 宗親의 封爵에 쓰던것이었으나 후에 公候伯子男의 號를 廉止함과 더불어 一般臣僚의 勳位에도 君・府院君의 號를 轉用하되 이들을 異姓諸君이라 하여 區別한 것이다. 그러나 漸次 臣僚에 대한 封君濫發의 弊가 드러나자 마침내 功臣과 中宮父親이 아니면 封君을 不許하게 이르고 또 功臣의 君號에는 府院의 字를 쓰는 것이 慣例가 되었다. (뒤에는 君과 府院君을 兩用함) 이로써 李朝에 있은 君號의 通制를 보면 宗親에서는 嫫王子는 大君이라하고 庶王子는 君이라하여 모두 無階이고 世子・大君의 嫫君子와 嫫長孫은 君을 封하여 從一品乃至 從二品이며 國舅는 으례히 府院君을 封하여 正一品이요. 功臣은 君을 封하여 正一品乃至 從二品인데 그 承繼者도 또한 그러하고 親功臣으로서 正一品에 升進하면 府院二字를 加하였다. ⁽⁴⁴⁾

다음 이들 官僚의 總人員數는 勿論 時代에 따라 差異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나, 國初에 文官數는 正一品에서 從九品에 이르기 까지 520餘員이고 武官數는 上將軍에서 隊長 隊副에 이르기 까지 4170餘員에 達하여 中國보다도 3倍나 되었고 이에 包含되지 않은 祿官과 檢校(實職 아닌 官職)도 적지 않았다 하며 ⁽⁴⁵⁾, 이 定員마저 여러가지 壓力으로 지켜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重要하지 않은 官職을 整理하라는 提議와 上疏文이 거듭 나타난바 있었다. ⁽⁴⁶⁾

한편 한때 文班의 內外職이 각각 400員에 達하고 武班은 500餘員에 達했다고도 한다. ⁽⁴⁷⁾ 如何間에 定期 및 不定期의 各種科舉가 卽興의 으로 頻繁하게 實施됨에 따라 文武科舉에 합격者로서 官職의 資格者の 數는 增加하여 가는데 官職의 數는 이에 正比例해서 增加하지

어 守를 하지 못함」.

(44)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前揭書 pp. 35.

(45) 定宗 2年(1400) 門下府冗官(용관) 陶汰의 上疏定宗實錄卷四、麻生武龜著 朝鮮中央及地方制度沿革史, 朝鮮史 講座收錄, pp. 30~33.

(46) 太祖 7年 4月 諫官 朴信等上言. 「麗末, 官爵冗濫하여 都評議使司의 官員 70名에 達하였으며 太祖 即位時 이를 整理하였으나 其後 10년이 못가서 56名에 이르다. 周官制를 보면 단지 三公六卿으로 天下를 다스렸으며 明도 六部로서 다스렸지만 面積이 千里도 못되는 우리나라에서는 宰相이 倍나 많을뿐더러 私心을 가지고 任免黜陟하여 官規가 매우 紊亂하다……」(太祖實錄卷 13) (麻生武龜 前揭書 pp. 29~30).

(47) 星湖箇說類選 人事 科薦合一.

않았을 뿐만 아니라 科擧를 거치지 않고도 任官된 隨官數도 漸次 많아져서 過剩狀態를 가져 왔다. 특히 武科出身은 過剩狀態가甚았으며 때에 따라서는 단번에 數千名을 合格시킨 結果 資格없는 無能者가 많았다. 定規科試는 每 3 年에 一回씩 33人을 產出하므로 李朝를 通해 167 回 實施한 것으로 通算하여 總人員數 5511 名에 達하나, 李朝時의 合格者總數는 15,547 名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定規科擧 合格者의 수는 總合格者數의 35%밖에 안되며, 官職數를 520 로 볼 때 얼마나 合格者數의 過剩을 招來했는가를 알수 있겠다.⁽⁴⁸⁾ 거기다 官僚의 在職期間을 約 20 年으로 計算할때 所謂 登龍門을 通過했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合格者들이 官職에 任用될 資格은 있으면서 그 機會만을 기다리게 되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으며⁽⁴⁹⁾, 여기서 이들은 定員 職을 싸고도는 激烈한 生存競爭에 沒頭하였고 家門의 生死를 건 黨爭에 모든 精力を 쏟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官職中에서도 堂上官은 勿論 少數로서 正二品以上은 10 餘員에 不過 하였고⁽⁵⁰⁾, 1885 年 11 月 議政府 座目을 보면 堂上官이 總 62 名인데 그중 東班이 23 名이고 西班이 39 名으로 되어 있다.⁽⁵¹⁾

무릇 官職이 모든 價值의 源泉이며 그것을 象徵하는 이 時代에는 官職의 數를 制限할 必要가 있었고, 또 事實上 身分 地域 前遇關係 등 여러 面에서 官路를 制限하였다. 그러나 한 편 官職이 特權化하여 官僚가 現職에서 물러난 뒤에도 休職形式으로 一時 或은 一定時期 동안 官僚의 生活을 保障하기 위한 祿俸을 받게 하고 그 身分도 保障시키기 為하여 「遞兒」職 또는 遷兒祿을 많이 두었던 것이다. 이는 오늘날의 休職俸 또는 恩給俸에 該當하는 것이다. 王朝初期에는 이와 같은 實職 아닌 官職을 「檢校」라 하여 中樞府 漢城府 등에 그 職을 두었던 것이나 後에 五衛의 兵制를 改廢하고 官名과 祿俸을 그대로 남긴채 이를 遷兒職이라고稱했고 中期 以後에는 遷兒職은 正職의 4,5 倍에 까지 達하였다.⁽⁵²⁾

다음 官職에는 대개 一定한 任期가 있어서 이 任期가 차면 轉勤 혹은 升進이 되는 것이며 이것을 「仕滿」 또는 「個滿」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任期制를 쓴것은, 첫째로 特定 官職에 오래 在任하면 弊害가 發生했기 때문이며, 둘째로 一定期間 한 官職에 勤務하여 그 事務에 益熟할 必要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六品以上은 出勤日이 900 日(30朔)이 達한 뒤에 轉勤하고, 七品以下是 450 日(15朔) 名譽職으로 있든 無祿官은 360日(12個月)로 轉勤한 것이다.⁽⁵³⁾ 그러나 이러한 規定은 하나의 原則에 不過하고 차차 法이 해이되어 제대로 遵行되지

(48) 朴東緒 韓國官僚制度의 歷史的 展開 1961. p. 29.

(49) 及第者들의 合格率은 不過 10%였고 「30 老明經 50 少進士」라 하여 明經科는 30 歲 及第者도 年老者였으나 進士科는 50 歲의 及第者도 젊은편이었다고 하며 그 通過率 위해 열번以上の 應試 조차 試圖했다하니 富裕級이 아니면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해 斷念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朴文玉 韓國政府論 博英社, 1963. p. 129.

(50) 芝峰類說 官職 官制. 大臣原任外 正二品以上은 15.6 名이었고 文官嘉善은 20 人 未滿이었다(文獻備考, 職官考 16, 總論官制).

(51) 國史編纂委員會刊 備邊司 謄錄二十七. 서울 東國文化社 4293 年 352~355.

(52) 經國大典 吏典 遷兒 前揭書 p. 162. 繢大典 兵典 京官職五衛.

못하였으며 勸務日數의 計算도 實際의 視務日數가 아닌 任官後의 日數를 意味하는 일이 많았으며, 이것조차도 遵行되지 않아 때로는 銓郎과 言官이 다달이 昇進 또는 轉勤된 일이 있었고, 혹은 科舉에 及第하여 채 5년도 못되어 堂上官이 되거나 10년이 못되어 宰相이 된 경우 조차 있었던 것이다.⁽⁵⁴⁾ 이렇듯 轉職昇進의 制度가 一定한 實績을 原則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堂上官以上은 不問하고 中央의 堂下官 以下은 6周年 地方의 守令級은 9周年 觀察使所屬은 6周年으로 하는 것이 차라리 可하리라는 意見이 나올 程度였다.⁽⁵⁵⁾

특히 中央의 要職에 있어 그 任命된 職責을 못마땅히 생각하면 「呈病」 또는 「避嫌」 등으로 그 任命을 離讓하는 일이 많았으며, 자리잡을 사이도 없이 바로 옮기는 이른바 朝拜暮遷의 慣例도 誇張이 아닐 정도였다.⁽⁵⁶⁾ 다만 地方官의 任期는 비교적 嚴格하게 遵行되었다. 이를 특히 「瓜滿」「瓜期」 또는 「瓜限」이라 하여 觀察使·都事는 在職期間 360日(一年), 守令은 5年, 堂上官과 家族을 同伴하지 아니한 守令 및 訓導등은 2年半, (農繁期에는 移動하지 않음), 그리고 武官職인 節道使 虞候 評事는 2年, 家族同伴하지 아니한 兼使 萬后는 2年半을 原則으로 하였으나,⁽⁵⁷⁾ 뒤에 數次의 變更을 치르다가 留守·觀察使가 2年, 都事が 1年, 守令이 30個月 또는 60個月이 되면 각己 移動하게 되었다.⁽⁵⁸⁾ 이와같이 地方官의 任期를 嚴格히 遵行한 것은 그들은 民政에 必要한 知識이나 經驗이 특히 豐富한 경우가 아니면 그 一定한 期間 任地에서 民利民福을 圖謀하기 보다 人民에 대한 苛斂誅求가 자행되기 쉬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特別한 技術과 經驗 및 資格을 要하는 官職은 任期에 구하지 않고 오래 在任케 하는 일이 있었던바 이 制度를 久任 그 자리를 久任窓 그벼슬 있는 官廳을 久任衙門이라 하였으며, 대개 各 官衙의 廉務 會計級 職位인 直長, 判官, 主簿 등에 久任窓가 많았다. 이 制度는 主로 技術系 職位를 專門化 시킴으로서 行政能率을 向上 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나 이에 대해서는 太宗朝以來로 많은 論議가 있었으며 經國大典에서도 各官衙의 下級僚屬若干을 久任으로 하는 程度에 그쳤던 것이다. 더욱이 높은 地位로 昇進하려면 여러자리 履歷을 치러야 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급한 무리들은 바빠 그 資格을 具備하려고 핑계핑계 자리옮기기를 서둘렀기 때문에 높고 重要한 職位일수록 久任은 고사하고 一定한 任期조차 遵守되지 않는 형편이었다.⁽⁵⁹⁾

(53)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pp. 113~116.

(54) 芝峰類說卷四 官職部(六典條例卷一, 吏典, 除授, 兩銓便攷卷一, 東銓, 計仕及瓜滿, 卷二兩銓 計仕及箇滿).

(55) 磻溪隨錄卷十三, 古典刊行會 p. 261. 「任官之制」.

(56) 文獻備考 職官考 十六 前揭書 p. 665. 「今之授官, 固皆擇人, 而朝拜暮遷, 席不暇暖……一日呈病, 二日避嫌……」.

(57) 經國大典 吏典 外官職 및 同兵典 外官職, 前揭書 pp. 113~114, p. 341.

(58) 兩銓便攷卷一, 東銓 守令에는 三年窓와 六年窓가 있어 前者가 30個月 後者는 60個月.

(59) 增補文獻備考, 卷之 196, 選舉考 久任, 前揭書 pp. 286~290, 磻溪隨錄卷十三, 前揭書 pp. 261~272. 久任을 朝家로부터 하는 말이라면 本人으로 부터 보면 久勤이 되니 兩者는 類語로 使用되었다. 그리고 이를 또 「積仕久勤」略하여 「積仕」라고도 했고 現代 俗語에 「구근」「근사 모은

一般的으로 久任 또는 久勤은 文武 어느편에도 通用하는 것이지만 後期에 이르러서는 거의 武官任用上의 專用語가 되었다. 그것은 대개 武科出身者の 數에 比하여 官職자리가 比較的 적음으로 昇進轉勤이 쉽지 않고 한 職位에 沈滯되는 者가 많아 이들을 優先的으로 任用하기 위하여 一定한 部面의 官職(主로 爰使·萬戶·別將·權管等의 邊將)에 「久勤算」라는 것을 特設하여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久勤邊將은 京外各營將校의 勤仕가 滿 45個月된 者中에서 任用되는데 이들의 久勤은 定期的으로 兵曹判書에게 報告되어 그의 面接審查를 거쳐 適當한 時機에 適處에 任用되는 것이었다.⁽⁶⁰⁾

그리고 官職의 任期滿了와 關聯하여 「解由」라는 慣例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가 辭任할 때 在職中の 會計·財政 또는 現物에 대한 審計를 받아 責任을 解除하여 깨끗이 自由人이 되는 節次를 말하는 것이다.⁽⁶¹⁾ 이 制度는 宋代의 官制에 由來하며 李朝의 開國初期에도 守令의 交代에 解由를 嚴格히 한 史實이 보이며⁽⁶²⁾, 中央의 錢穀衙門 官吏의 解由와 特히 地分官의 解由는 언제나 嚴密을 期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 事務는 戶曹管下의 算學廳에서 管掌하였다.

한편 任用에 있어서 어떤 官職은 그 職責을 堪當하는데 必要한 履歷의 有無를 가리는 人事銓衡上의 內規가 있었으며 여기서 履歷은 實際上 어느 官職을 지낸 資格을 意味한 것이다.例컨대 東班에서는 詞訟履歷이라 하여 主로 荫官이 地方官에 任命될 때는 곧 戶曹, 刑曹, 漢城府, 司憲府등에서의 訴訟判決의 經驗이 要求되고 西班에서는 邊地履歷이라 하여 防禦使, 兵, 水使의 要職에 오르려면 國境方面 守備의 經驗이 要求된 것이다.

한편 中央과 地方官職 任用에 있어서 하나의 慣行으로서 相避制가 있었다. 即 京官職이나 特히 地方官職에서 在職官員과 一定한 親戚關係가 있거나 職務遂行上 分離시킬 必要가 있는 關係에 있는 경우에는 함께 벼슬하는 것을 避했던 것이다. 本來 中國唐宋五代의 亂을 치른 後宋代에 이르러 地方行政은 中央派遣官의 手中에 左右되었던 바 中央政府로서는 當該地方出身者를 登用하여 統治를 委任하는 것이 자칫하면 集權行政을 阻害할 憂慮가 있기 때문에 所謂 「回避」라는 制令을 公布한바 있었던 것이다. 이 制度는 元明에서 近代에 이르기 까지 더욱 繁雜한 條令으로 發達한바 있으나 朝鮮王朝에서는 그것이 相避制라 하여 廣範하게 實施한 것이다. 이 制度는 多分히 政治的 意義를 內包한 것으로서 家族 또는 親戚關係와 鄉土出身 關係등의 結合으로 因하여 地方豪族勢力의 扶植으로 叛亂을 惹起하거나 情實에 빠져 行政의 公正을 일거나 또는 온 官衙가 뭉쳐 한 두 族黨의 巢窟이 되어 租稅와 같은 國家收入을 橫領榨取하거나 그밖에 여러가지 弊害와 危險이 있기 때문에 이를 避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理由에서 或은 南北互選의 法을 制定하고 或은 親族回避의 複雜한 法令을 制定하

다」는 말의 淵由한바이다.

(60) 六典條例卷七, 兵曹, 政色, 總例, 兩銓便攷 卷二, 西銓, 久勤.

(61) 經國大典 戶典 解由 前揭書 p. 193.

(62) 太祖實錄 卷二 元年九月壬寅.

고 또는 職務上各種의 相避規定을 準用하는 등 地方勢力を 減殺하는데 가진 努力を 다했던 것이다.⁽⁶³⁾

그리고 官吏任用을 위한 銓衡節次는 언제나 優重을 期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 官僚의 身分臺帳인 政案과 官吏의 考課 褒貶 및 成績優劣의 判定表인 殿最등의 慣行이 遵行되었던 것이다. 即 政案은 現職의 官僚는 勿論하고 前職官僚까지 그 姓名 履歷 功過등을 詳細히 記載하여 吏曹 및 兵曹에 備置하고 官職任用時에 當事者の 銓衡上의 證據資料로 삼았던 것이다.⁽⁶⁴⁾

또한 考課는 官僚의 功過 및 勤務成績을 評定하는 制度로서 高麗의 考課法을 본따서 李朝에 드러와서는 太祖元年에 이미 考課法을 採用했으며 그뒤에 여러번 法制改革을 거듭하다가 드디어 經國大典의 考課, 褒貶制를 이루웠다.⁽⁶⁵⁾ 이에 의하면 中央官僚는 各官廳의 長官(堂上官 또는 提調)이 그리고 地方官僚는 觀察使가 每年 6月 15日과 12月 15日에 各己所屬官員들의 勤務成績을 上, 中, 下로 評定해서 報告케 하여 이것을 後의 人事行政의 基準으로 삼은 것이며 一般行政機關에서는 所屬官員의 勤務實態와 觀察使는 管下 守令의 七事⁽⁶⁶⁾의 實績을 每年末에 報告케 하며 特히 人民의 爭訟을 判決하는 刑曹 漢城府 開城府, 掌隸院의 堂下官은 每 3個月間의 判決度數를 各季節마다 報告케 하여 勤怠 本位로 成績을 評定한 것이다. 그리고 考課, 褒貶를 一名 殿最라고도 했으며⁽⁶⁷⁾ 殿은 成績評定의 「下」를 意味하고 最는 「上」을 意味했기 때문이었다. 殿最의 評定은 公正慎重을 期하라는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中央의 詞訟·錢穀衙門과 地方守令의 成績考查는 가장 嚴密을 期했던 것은 앞에서도 論及한바와 같다. 即 이들에게는 單純히 上·中·下만 매김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四字題目」이라하여 四字의 句로서 事實에 對한 說明을 부치게 하였던 것이다. 考課에 여러번 「上」이 되면 昇進이되고 「下」가 되면 勿論 龍免이지만 「中」에 대해서는 官業에 따라서 一次의 中에는 或은 進級이나 轉職을 막거나 或은 無祿官으로 옮기며 二次乃至三次의 거듭 中이면 龍免되었다.

(63) 經國大典, 吏典, 相避, p. 164. 繢大典 吏典 相避 前揭書 pp. 64~65. 大典會通 前揭書, pp. 71 72. 職務의 性格上 相避한 例로서는 科舉에 應試者와 試官, 臺官과 兼臺, 書狀官과 使臣이 相避하는 등이다. 또한 相避制와는 直接關聯은 없지만 地方官員이 그의 妻子를 帶同치 못하게 한 人質制도 守令 및 其他 外官職의 地方勢力化를 牽制하기 위한 것이었다.

(64) 經國大典 吏曹, 政案 前揭書 pp. 158~159에는 「每三年, 京外官員의 出身과 來歷을 記錄하여 吏曹에 備置했다고 있고」 後代의 記錄으로는 大典會通, 朝鮮古書刊行會版六二面, 六典條例卷一 吏典 總例와 同卷七, 兵典總例 등에 政案의 實際가 나타나 있음.

(65) 太宗, 世宗 兩朝에 걸쳐 考功法, 考績黜陟法, 考課銓除法等이 實施되었으며, 經國大典 吏典, 褒貶, 考課 前揭書, pp. 159~162. 參照.

(66) 七事라함은 農商盛, 戶口增, 校學興, 軍政修, 賦役均, 詞訟簡, 奸(姦)猾息의 七個條目을 말함(經國大典吏典 考課 前揭書, p. 161).

(67) 褒貶과 殿最는 同意語로 法典上 通用되었지만 地方官의 殿最를 國家에서 가장 重視하고 또 守令自身도 殿最를 生命視한 關係로 普通 殿最라하면 宇令의 그것을 가르치게 되었다.

특히 堂上官과 守令은 一次의 中이라도 龕職되었다. 殿最의 評定에서 下를 매긴것이 없으면 그 擔當官은 으례히 情實의 嫌疑를 받게 된 것이며 特히 觀察使의 守令殿最에 下가 없을 때에는 當該 觀察使는 承政院의 注意와 問責을 받으며 때로는 視察員을 密派하여 그 實情을 監查케 하는 일도 있었다. 이는 守令을 近民의 官이라하여 그의 活政이 바로 地方生民의 福禍과 關聯됨으로 그 選任에 慎重했음을勿論하고 그에 對한 監督과 「인센티브」 incentive 를 周到하게 생각하여 人事行政에 實踐했기 때문이었다.⁽⁶⁸⁾

다음 高位層의 官僚에 대해서는 그 死後에 生前時의 功勞있었던 者에게 品階와 官職名을 追贈하여 荣譽를 누리게 하는 贈職制와 또 生前의 行跡에 따라 代名자와 謚號를 주는 贈謚制가 있었다. 經國大典에 宗親 및 文武官實職 二品以上 되는 者에게는 그의 三代(父母·祖父母·曾祖父母)에 官職을 追贈하고⁽⁶⁹⁾ 뒤에는 그 範圍를 擴大하여 正二品이 되지 못하는 者例컨대 名儒, 節臣, 또는 王室의 私親과 나아가서는 高官의 父祖 및 外國에 出征하여 外國에서 死亡한 者 또는 登科未仕코 死亡한 者에까지 品·職을 追贈해다.⁽⁷⁰⁾ 한편 大典에 宗親 및 文武官의 實職 正二品以上의 官職에 있던 者에게 謚號를 追贈하는 制度가 確立되어⁽⁷¹⁾ 一代에 遵行되었고 뒤에는 그 範圍를 擴大하여 正二品이 되지 못하는 大提學, 儒賢, 節臣등이 까지도 贈謚을 特許하였다.⁽⁷²⁾

以上으로서 朝鮮王朝의 人事行政에 있어 特權的 高級官僚任用의 根幹을 이루었던 科舉制度와 또한 官僚制度의 여러 例行의 節目과 人事慣行등에 關하여 考察하였다.

(二) 財務行政

(1) 財政上의 一般的性格

朝鮮王朝는 적어도 壬辰倭亂을 分水嶺으로 하여 財政機構와 節次 및 그 内容面에서 各已明白한 特徵을 들어내고 있다. 그것은 壬亂을 契機로 하여 傳統的 經濟體制의 붕괴가 促進되고 아울러 戰亂과 財政窮乏을 打開하기 위한 財政上의 整備가 促求되었기 때문이다.

國初에는 土地와 現物(主로 米豆와 布)이 財政手段 및 去來手段를 이루고 더러 楠貨와 布 그리고 鑄錢의流通을 보게 되다가 肅宗 4年(1678) 以後로 여러 차례의 鑄錢發行과 그 普

(68) 李朝 太祖 元年の 守令考課法에 의하면 公, 廉, 勤, 謹은 善이요 田野關, 戶口增, 賦役均, 學校興, 詞訟簡은 最오 貪, 暴, 懈, 劣은 惡이요 田野荒, 戶口損, 賦役煩, 學校廢, 詞訟滯는 殆이라 하고 거기에 다시 細密한 級等을 부친 것이다. 그러나 後에는 守令의 「七事」가 勤務評定의 種目을 이룬 것이며 이 七事는 始초에 守令의 任命을 받고 赴任할때에 朝廷에서 親히 타일러 보내는 條目이었다.

(69) 經國大典 吏典 追贈 前揭書, p. 163. 父母는 本人의 品階에 準하고 祖父母, 曾祖父母는 각각 차례로 一等식 遞降한다. 死亡한 親에게는 夫의 官職에 솟아 贈職하며 其他 大君의 妻父, 王子君의 妻父 및 親功臣과 功臣등에게 追贈封君했다.

(70) 繼大典, 吏典追贈, 六典條例, 吏典吏曹, 贈職, 文獻備考, 選舉考 贈職, pp. 291 ff.

(71) 經國大典, 吏典, 贈謚 前揭書, p. 163.

(72) 繼大典, 前揭書, p. 63, 文獻備考, 職官考, 26. pp. 795 ff.

及이 있었고 英正祖에 이르러 鑄錢을 命令하는 等을 契機로 國家의 公課負擔에도 貨幣로서 納付할수 있게 되었다.⁽⁷³⁾ 하지만 舊韓末에 日帝에 의한 貨幣整理事業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貨幣가 部分的으로 財政收支手段이 되었을뿐 大體의으로 米, 豆, 布 其他 各種 現物이 收支手段으로 利用되었다. 特히 土地自體가 財政上의 主要 收支手段으로서 利用된 것이며 이리하여 國家는 凡田을 六等分하여 每二十年마다 改量 成籍하여 戶曹, 本道, 本邑에 所藏해 둠으로서 財政政策上의 收支根據資料로 삼았으며,⁽⁷⁴⁾ 또한 地域別로 여러차례에 걸친 量田事業을 實施하여⁽⁷⁵⁾ 田政의 基礎로 삼았는데 그 田結數는 다음과 같다.

李朝時代의 田結數

單位 : 結

年 度	實 結 數	諸般稅結數	給災免稅結數	合 計
壬辰倭亂前(年代未詳)				
英祖 20年(1744年)	854,353		41,484	895,837
正祖 1年(1777年)	780,083	588,472	70,750	1,439,305
純祖 1年(1801年)	802,857	615,719	35,578	1,454,154
憲宗 1年(1835年)	770,109	638,798	52,320	1,462,127
哲宗 1年(1850年)	770,505	639,610	46,235	1,456,350
高宗 1年(1864年)	776,708	644,583	24,200	1,445,491
高宗 20年(1883年)	757,018	663,210	63,405	1,483,633

資料, 朝鮮 總督府中樞院, 田制考, 서울, 昭和 15年, 附錄 第1, 2 3表

前記한 바와같이 朝鮮朝의 財政은 土地및 現物財政이라 하겠으나 그것은 또한 家產의이고 無計劃의인 單調로운 構造를 이루웠다. 朝鮮王朝는 國王을 權力의 頂點으로 하는 家產國家로서 法制度가 매우 概括的이고 形式的이었던 만큼 國王과 官人の裁量權行使의 餘地는 매우 컸으며 公私財政의 限界가 瞬昧하여 三政의 亂과 같은 財政上의 亂脈을 惹起하기 조차 했다. 그러나 王室財政과 一般財政間의 混淆狀態에도 不拘하고 兩者가 全혀 無分別한 것은 아니었다. 王室 各府를 위한 機構, 人員과 王室의 財產(籍田 其他 内需司에서 出納하는 財物)은 法 其他 慣例에 의해 制約을 받고 있었으며 王室供上量도 一定한 限界가 있었다.

現代財政에 있어서는 物資를 中心으로한 物動計劃과 더부터 「豫算」(budget, Haushaltplan)

(73) 萬機要覽 財用編四 錢貨(朝鮮總督府 中樞院編) 昭和 12年 pp. 463 ff. 大典會通 卷之二, 戶典, 國幣, 高承濟 近世韓國 產業史研究 서울 大東文化社, 1959. pp. 37~48. 崔虎鎮 近代韓國經濟史研究, 서울 博英社, 1964. pp. 187 ff. 韓國銀行 發卷部 韓國貨幣史 서울, 1966, p. 26.

(74) 大典會通 卷之二, 戶典, 量田, p. 208. 萬機要覽 財用篇二, 田結 前揭書, p. 197.

(75) 洪以燮, 丁若鏞의 政治經濟思想研究, 서울, 韓國研究圖書, 1957. p. 54(太宗朝 5回, 世宗朝 3回, 世祖 1回, 成宗朝 2回, 燕山君朝 1回 中宗朝 2回, 宣祖朝 1回, 光海君朝 1回, 仁祖朝 1回, 顯宗朝 2回 肅宗朝 3回, 英祖朝 16回 計 38回).

이라는 媒介體에 의해서 國家財政에 一定한 計劃性을 賦與하고 있으나 朝鮮朝에 있어서는 1895年의 會計法施行에 의한 1896年(建陽元年)의 近代的인 豫算 制度가 마련되기까지에는 一定한 計劃性이 있는 財政執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李朝時代에 있어서 國家財政은 비록 西歐的인 意味에 있어서의 近代的 豫算制度가 아니라 하더라도 一年制를 基準으로 해서 一定한 豫計속에서 運營이 되었다.

經國大典에는 “凡經費，用橫看及貢案”이라 明文化 되어있고⁽⁷⁶⁾ 繢大典에는 “參用大同事目”이라는 文言이 追加되어 있으며 大典通編에는 “參用度支定例”라는 文言이 追加되어 있는데⁽⁷⁷⁾ 이 橫看(每年支出을 豫算하여 橫으로 列記 한 것), 貢案(各宮各司에 供上하는 貢物을 豫定하여 記載한 書冊), 大同事目(光海君初에 實施한 大同法에 의한 大同米에 關한 事目), 度支定例(英祖二十五年에 世俗一般이 奢侈에 흘러 國家財政이 困境에 빠지자 各殿, 宮廟, 社, 府, 院, 寺, 監等에 있어서의 大小用度를 節減시키기 위하여 戶曹判書 朴文秀에 命하여 만든 度支 即 國家會計에 關한 定例)등의 모두가 國家財政에 關한 豫計 即 素朴한 豫算制度의 類型 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萬機要覽 財用篇에 보면 各道年分을 成冊하여 歲前啓聞하고 戶曹에 謄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所謂「收租案」으로서 一年田稅 收入豫算案인 것이다.⁽⁷⁸⁾ 그리고 經國大典에 나와 있는 祿料(俸給規程)도 部分의인 豫計手段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土地台帳 役割을 하던 量案도 當時에 있어서는 土地에 對한 一種의 豫計手段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李朝時代의 財政收入은 租·庸·調三者를 基幹으로 해서 構成되어 있음은 이미 論及한 바와 같다. 財政支出은 王室費, 行政費, 祿料費 等, 主로 王室과 政權維持를 위한 消費的인 部面의 單調로운 것이었다. 이와 같이 財政面에서 收支構造가 單調로운 것은 當時의 產業構造가 農業에 置重한 事實과 國家의 機能이 主로 保護的이고 消費的인 機能에 置重되어 있었다는데 起因된다 하겠다.

(2) 財政機構

中央財政機構는 議政府 밑에 戶曹가 中心機構라고 하겠으며 그 밑에는 여러 所屬官廳이 있었고 또 이들 戶曹外에 財政機關으로서도 承政院 司鑿院(吏曹屬衙門) 尙衣院 등이 있었으나 이들 職制에 關해서는 앞에서 論及한 바이다.

그리고 地方財政機關으로는 觀察使 都護府使 및 各守令 밑에 中央의 六曹와 併行해서 六房을 두고 六房中 戶房이 上司의 命令을 받아 戶口, 貢賦, 田穀等 財政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였으며 한편 稅穀을 貯藏하는 倉庫와 現物을 溝運할 여러 漕倉이 各地에 있었다. 또한

(76) 經國大典 戶典, 經費, 前揭書, p. 167.

(77) 大典會通 卷之二, 戶典 經費, p. 205.

(78) 萬機要覽, 財用篇二, 年分 朝鮮總督府 中樞院編, pp. 215~218.

太宗 4 年(1404)에 設置한 常平廳은 物價調節機關으로서 宣祖 41年(1608)에 均役廳에 合廳되었고 王亂後에는 戶曹의 一部 職制變更斗 宣惠廳, 均役廳 賑恤廳 等의 新設을 보았으나 여기서는 省略한다.

(3) 財政節次

① 稅收物 決定節次——當時의 稅收物(主로 田稅物) 決定節次는 다음과 같은 過程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判斷된다.⁽⁷⁹⁾

(I) 每年 九月前에 모든 田地에 關하여 地方守令은 年分(每年 田稅率 : 年分九等)等第를 決定함.

(II) 觀察使는 再審啓聞하여 議政府·六曹의 同議에 의하여 다음 收稅率에 따라서 收稅하였다. (田品六等法에 따른 年分九等法)

上上年	實十分	相當20斗
上中年	九分	18斗
上下年	八分	16斗
中上年	七分	14斗
中中年	六分	12斗
中下年	五分	10斗
下上年	四分	8斗
下中年	三分	6斗
下下年	二分	4斗
等外年	一分	免稅

(III) 新加耕田, 全災傷田, 過半災傷田, 痘으로 因하여 未耕中인 全陳田은 佃夫가 勸農官에게 報告하면 勸農官은 親審하여 八月望前에 守令에게 報告하고 守令은 이를 踏勘打量한 後 觀察使에게 報告하여 觀察使가 實態를 檢覈한 후 置簿한다. 그래서 觀察使는 守令이 報告한立案을 守令에게 還送하여 九月望前에 見數啓聞하고 朝官을 派遣하여 上記置簿 및立案을 憑考覆審함으로써 租稅를 定하였다.

續大典이나 萬機要覽에 나와 있는 稅收決定節次는 다음과 같다.⁽⁸⁰⁾

(1) 戶曹는 每年 年의 豊凶에 따라서 年分事目을 각道에 下達하고 災年에는 即時 災名을 下達함.

(2) 守令은 災實 陳起를 踏勘하여 觀察使에게 報告하고 觀察使는 이를 巡審啓聞함.

(3) 敬差官, 都事가 抽牲의 標記(抽籤에 의해서 當籤된 某邑字의 記錄을 말하는데 竹籤에

(79) 大典會通 卷之二, 戶典, 收稅 中樞院版, pp. 246~248.

(80) 大典會通 上同 pp. 248~252. 萬機要覽 財用篇二田結, p. 197.

某邑의 字號多數를 써서 竹筒에 넣어 淘雜시킨 후 그中 하나를抽出하여 當籤시킨 某邑其字의 土地를 覆審하는 일)를 戸曹에게서 받아 覆審考驗하여 磨勘啓聞한 후 戸曹에서 檢算定稅함 道의 漁鹽稅錄은 成籍後 戸曹, 本道, 本邑에 所藏하고 雜稅는 工匠의 等第及 坐賈·公廊의 數를 登錄하여 戸曹, 工曹, 本道, 本邑에 所藏하였다.

그리고 各種 收稅決定에 參照키 위하여 京은 漢城府에서, 外는 觀察使가 凡人口의 生產, 物故의 數 各道 牧揚의 故失 遺失된 馬牛의 數를 報告받았다.

② 財政收支節次—李朝時代의 田稅收納은 大體로 各郡에 있어서 每年 十一月에 開始하여 翌年 正月에 終了하고 京倉運納期限은 各地方道程의 遠近과 水運陸運에 따라서 相異하게 規定되었다.⁽⁸¹⁾ 그리고 漁稅같은 것은 每年 觀察使가 調査하여 收稅案을 作成하고 邑鎮에 移牒하여 徵收시켰으며 當該年 八月內에 納付하도록 하였다.⁽⁸²⁾ 한편 稅貢物의 收納은 翌年 6月까지 上納하여야 하고 (田稅外의 貢物은 二月限) 戸曹는 每年末에 各司의 貢物收納數를 檢討하여 未納한 官司및 守令은 啓聞하여 罷免하였다. 李朝時代의 法典들을 보면 收入에 關해서는 많은 規定을 두고 있으면서도 支出에 關해서는 比較的 規定을 두지 않고 있으며, 奉給支出에 關해서만 詳細한 規定을 두고 있는데⁽⁸³⁾, 이는 當時에 있어서 所謂「量出制入」의 原則에 의해서 財政을 運營한 것이 아니라 無條件 많은 財物을 거두어 드리고 이에 따라서 慷意의으로 支出한 證據라 할 수 있겠다.

다음 會計節次를 보건데 ① 모든 物質의 出納結果는, 京은 季朔에, 그리고 京外는 歲季에 會計하여 啓聞하여야 하고 ② 戸曹 所管外의 諸司는 承政院의 承傳帖印을 받고 諸物을 支供하며 ③ 官吏遞代時에 所掌物이 異常有으면 解由狀(責任解除狀)을 發給하는 것이다.⁽⁸⁴⁾

(4) 財政의 内容

朝鮮朝時代에 있어 實際 收入額이 얼마나 되고 種目別 歲入이 얼마나 되었는가 하는 것은 信憑性있는 統計資料의 缺如로 因하여 매우 尺度하기 힘들다. 오늘날入手할수 있는 初期의 統計資料로서는 다음表가 參考가 된다.(다음 面의 表 參照)

한편 支出構造는 當時의 支出手段이 多樣한 現物이었고, 多種 統計值도 斷片的으로 마련되어 있을 뿐더러 術語나 用語가 不分明하기 때문에 一定 年度에 있어서의 總 經費를 機能別로 分類한다는 것은 困難하고 또 그릇된 結論을 導出해낼 念慮가 있다. 그러나 當時의 政府活動을 財政의으로 比較 考察하는 見地에서 柳馨遠의 計劃 數值를 基礎로 해서 歲出構造를 機能面에서 分類推斷하면 다음과 같다(孝宗—顯宗朝에 作成된 것으로 推測됨)

(81) 李朝時代の財政, 서울 昭和 11 年 朝鮮總督府編, pp. 188 ff.

(82) 上同, pp. 195~197.

(83) 大典會通, 卷之二, 戸典 祿料, 前揭書, pp. 211~218.

(84) 經國大典 戸典 會計, p. 192.

表 II. 李朝時代 歲入構造

年 度 别	米(石)	大豆(石)	粟(石)	綿布(匹)	麻布(匹)	錢(兩)	雜穀(石)	銀(兩)	備 考
太宗 4年(1404年)	888,481								米外의 것은未詳
宣祖 24年(1590年)	492,222								"
仁祖 24年(1647年)	167,253								"
孝宗 2年(1651年)	99,270	41,727	16,460	109,100	5,000			39,093	
顯宗 8年(1667年)	103,963	51,391	15,032	86,650	5,000			30,362	
肅宗 30年(1707年)	107,914	53,158	31,158	87,350	13,550	66,260		17,733	
景宗 3年(1723年)	98,511	63,527	4,590	78,000	11,500	115,026		31,156	
英祖 43年(1767年)	156,055	10,057	5,052	207,829	21,929	247,229	120 (小豆)		
正租 20年(1797年)	128,498	10,656	3,259	240,240	16,022	350,409	197 (小豆)		
純租 7年(1807年)	678,377	105,791	105,130	40		369,317			
開國 50年(1893年)	296,828	43,897	3,164	176,076	13,339	2,072, 738			

資料：朝鮮總督府，李朝時代の財政，서울，昭和 11年，pp. 216ff, 220ff, 223ff, 227, 233ff, 237ff, & 241.

李朝時代의 歲出經費構造 (柳馨遠의 計劃案)

(1) 總 經費構造 (機能別)

資料：藩溪收錄，卷十九，祿制。

費 目(機能別)	費 量(米：斛)	比 率(%)	備 考
王 室 費	10,000	0.5	
祿 債	343,020	18.4	實際比率：43.1%
行 政 費	1,067,963	57.2	
兵 費	316,216	11.6	
其 他 雜 費	130,000	12.3	
合 計	1,878,000餘 (實合計額：1,864,000餘)	100.0	

※ 地方歲出을 行政費에 包含시켜서 比率이 18.4%이니 地方費中에는 66.6%가 祿俸에 充當되므로 實際 祿俸比率은 43.1%가 됩.

(2) 總 經費構造(京. 外別)

京 外 别	費 量(米斛)	比 率(%)	備 考
中 央	478,000	25.4	
地 方	1,020,300	54.4	
其 他	380,000	20.2	大部分의 地方費에 該當
合 計	1,878,000	100.0	

地方歲出에는 地方官吏量 위한 祿俸이 66.6% 包含되고 있음.

(3) 中央經費 構造

費　目(機能別)	費　量(米 : 銭)	比　率(%)
王　室　費	10,000	2.1
祿　俸	273,820	57.1
行　政　費	115,000	24.1
兵　費	50,000	10.4
其　他	30,000	6.3
合　計	1,878,000	100.0

다음 王室을 위한 各種 機構의 純粹한 官祿을 除外한 純粹한 供上用으로 支出되는 費用의概要是 다음과 같다.⁽⁵⁷⁾ 이 供上은 200 餘種의 王室의 衣食住 全般에 걸친 現物로 되어 있으나 다음 表는 宮殿別 總 供上量을 抵錢換算한 것임.)

李朝時代 總供上量(折錢)

宮　殿　別	戶　曹　所　管	宣　惠　廳　所　管	計
大　殿	53,216兩 4錢 4分	52,857兩 5錢 2分	106,073兩 9錢 6分
中　宮　殿	51,145兩 4錢 3分	9,308兩 5分	60,453兩 4錢 8分
王　大　妃　殿	60,365兩 8錢 7分	13,733兩 2錢 8分	74,099兩 1錢 5分
惠　慶　宮	56,295兩 2錢 6分	17,719兩 6錢 8分	74,014兩 9錢 4分
嘉　順　宮	47,670兩 2分	7,829兩 4錢 3分	55,499兩 4錢 5分
計	268,691兩 18錢 22分	101,336兩 17錢 26分	37,0140兩 9錢 28分

總 370, 140兩 9錢 28分中 米에 該當하는 總米量은 68,173兩(6,390石)임

資料：萬機要覽，財用篇，一，供上。

李朝時代에 있어서 官吏들에 對한 祿俸이 차지하고 있는 比率은相當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前記 柳馨遠의 磨鍊(試案)에 의하면 中央經費中에서는 57.1%가 占하고 있고 總經費(京外合算)中에서는 43.1%를 占하고 있다. 그리고 地方費中에서는 66.6%가 占하고 있다.

萬機要覽에 나와 있는 官吏 祿料總量은 다음과 같다.(次面 도표 참조)

(三) 戶籍管理

朝鮮王朝는 戶籍의 整備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그것은 戶籍이 우선 國家가 人民에 대하여 勞動力を 役使하는 各種「役」의 該當者를 把握하는 基盤이 되었으며, 아울러 또 軍籍의 根據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國家의 財政이 人民의 勞動力에 크게 依存했고 國家의 兵力이 人民의 徵用에 依存했던 만큼 人口의 調査와 把握 또는 戶籍整理는 國家經營의 緊要한 課題

李朝時代 官吏 祿俸量(年)

單位 : 石

種 别	米	田 米	太	合 計
百 官 祿 米	18,204		10,872	29,076
内 官 祿 米	4,092			5,868
各 項 散 料	19,272	1,575	1,776	27,211
			6,364	
計	41,568	1,575	19,012	62,155

※ 外職祿俸은 除外한 것임

가 아닐수 없었다.

따라서 우선 戸籍은 每三年마다 고쳐 만들어 戶曹와 漢城府 및 該當道와 그 고을에 整備해 두었으며, 特히 漢城府는 全國의인 戸籍管理를 擔當하였다.⁽⁸⁵⁾ 戸籍簿의 記載樣式은 『戶○部○坊 第○里(地方이면 ○面○里), 住○職 姓名 年甲 本貫 四祖 妻○氏年甲 本貫四祖, 率居子, 女○○年甲, 奴婢雇工○○年甲』을 原則으로 하였고⁽⁸⁶⁾ 入籍時에는 그 謄本을 作成出給하고 出籍者에 대하여는 戶口를 成給했으며 戸籍을 移動하는 경우에는 新舊의 居住地의 官에서 公文書를 相互對照한 뒤에야 그 接受를 許可했다. 이와 같이 戸籍作成과 管理는 嚴密을 期하였으며 戸籍上의 內容을 偽造하거나, 守令이 戸籍을 期間內에 上送하지 않거나, 또는 入籍을 않거나 戶口가 없거나 하는 경우에는 諭罪處罰한 것이다.

한편 戸籍은 軍籍作成의 根據가 된 것으로서 京城과 地方의 軍丁은 6年에 一次씩 兵籍을 作成하되, 京城에서는 5部가, 地方에서는 各其, 節度使가, 그리고 濟州의 3個邑에서는 節度使가 各己 兵籍을 作成하였다. 이와같이 地方에서 作成된 兵籍은 一部를 兵曹에 보내어 保管され하고 兵曹는 그 總數를 王에게 報告했다. 다만 各 牧場의 牧子는 兵馬節度使가, 鄉吏 및 驛吏는 觀察使가 3년에 一次씩 그 籍을 作成하여 各各 保管하였다⁽⁸⁸⁾.

朝鮮朝에서 軍籍이 처음으로 作成된 것은 太祖二年이고 戶口의 이름으로 처음 全國의in 規模의 報告가 있었던 것은 太宗年이었으나 이것 亦是「口」가 아닌 男「丁」(16歲—60歲)의 統計였으며 役·庸을 負擔하는 16歲以上 60歲以下의 男女「口」의 統計는 世宗實錄 地理志에 보이는 것이 初期의 記錄으로 알려져 있다.⁽⁸⁹⁾

무릇 戸籍은 諸般 課稅의 源泉이 되고 各種 賦役의 根本이 되었던 만큼 큰 政事로써 嚴密히 整理하지 않으면 賦課의 公平을 잃게 될은勿論이다. 그러나 當時 事情으로 戶·口의 調査

(85) 經國大典二, 戶典, 戸籍 前揭書, p. 167.

(86) 經國大典 禮典, 戶口式, p. 327.

(87) 繢大典 卷之二 戶典 戸籍.

(88) 經國大典兵典, 成籍 前揭書, pp. 454~455.

(89) 韓國史, 震檀學會, 近世前期篇, 李相伯, pp. 426~428.

技術이 幼稚하고 또 調査基準마져 때에 따라 一定치 않았기 때문에 그 正確性은 매우 疑心 할 餘地가 많았다.⁽⁹⁰⁾ 거기다 戶數의 增減에 依하여 賦課가 比例되므로 稽吏가 富村의 權豪에게 뇌물을 받고 共謀하여 富村에서 減戶하여다가 除役村에 移籍하고 그 原總을 충당키 위하여 貧村에다 偽戶를 虛錄하여 貧村의 賦課가 많으므로 貧民이 離散하여 廢村이 되는例가 있었던가 하면, 年齡과 身分에 依하여 兵役과 稅役을 면제하고 부과하는 것이 國法에 규정되어 있는지라 戶籍에 登錄할 때에 年齡을 增減하여 거짓 申告하고, 또 身分을 거짓 申告하는例도 있었으며, 한면 戶籍事目(法令)이 變更되거나 새로 公布될 때에 奸吏屬들이 民衆의 미련함을 미끼로 威脅과 공갈을 하면 그 犯罪事目에 關聯된 民衆은 물론하고 罪가 없는 民衆까지도 稽吏에게 뇌물을 주어 摘發을 보면하거나 미리 겁내어 豫防하는 것이 常例가 되었던 것이다.⁽⁹¹⁾

이리하여 戶籍整理의 正確을 期하기 위하여 家座簿(經緯表)를 作成케 한 일이 있으니 이는 各村과 家庭의 戶數 人口 貧富 身分 등 各項 實情을 상세히 調査記錄하여 이에 따라 賦課의 增減을 함으로써 그 公正을 期하고 稽吏의 作奸을 豫防하기 위한 것으로서⁽⁹²⁾ 守令이 赴任한 後 約 10日頃에 能文한 老吏로서 作成케 할 것과 그리고 戶籍 改定期에는 家座簿에 의거하여 各 村面의 戶籍와 貧富의 狀況을 正確하게 조정하고 本邑의 戶籍 總數와 比較 是正케 한 것이다.

(四) 交通・通信

(1) 都邑 道路 驛傳

朝鮮王朝의 首都은 現在 우리나라의 首都인 서울로서 漢城府라고 일컬어 왔다. 漢城이란 말은 서울 주변의 山川인 漢江, 南漢江, 南漢山 및 北漢山 등에 인한 地名이었고 新都 漢城府는 李氏 朝鮮이라는 새 王朝를 象徵하는 典型的인 東洋的 政治都市였다. 即 그것은 王室을 둘러싼 貴族官僚들이 대부분 여기에 정주하여 그들이 애호하는 王朝文化를 開花形成한 것으로 거기에는 市民的 階級도 없었고 市民經濟나 市民文化가 發生할 餘地가 없었다. 全國에서 搬送되는 租稅貢納은 漢城府를 中心으로 피어난 王朝文化의 物質的 基盤이 되었으며 따라서 都市의 商・工業의 發達은 지극히 不振하고 經濟는 王朝權力에 부수하는 현상으

(90) 後代에 이르러서는 戶籍記錄에 있어 一口一戶로 嚴重히 記錄하는 경우(覈法)가 있는가 하면 戶口를 私錄하는 경우(寬法)도 있었으며 한편 「戶」數量 實在 戶數로 하는 것이 아니고 中央에 報告되어 있는 戶數(各州郡의 役, 貢物 등 負擔 配定額에 比例하는 戶數)를 基準으로 適當히 配分하였다는 것(牧民心書 卷之十五, 戶籍) 또한 太宗 6年 總計는 一戶當 人口 2.0人인데 대하여 世宗實錄地理志 이하의 統計는 一戶當 人口가 3.5人으로부터 점차 4.3人 程度로 되어 있다(太宗實錄 4年 乙未, 世宗實錄 地理誌).

(91) 牧民心書 卷之十五, 戶籍.

(92) 家坐簿의 記錄 할 名項樣式으로는 里名, 人名, 品(族級) 世(戶主) 客(客戶) 業(職業) 役(軍役) 宅(屋間數) 田, 錢, 丁(男 17 歲以上) 女, 老(60 歲以上) 翳(男女 16 歲以下) 恤(廢疾者) 奴, 婦種(植物可貨者) 畜, 船, 銮(鐵釜) 등이다. (牧民心書 卷之十五, 戶籍).

로서 밖에 나타날 수가 없었다. 이미 世宗 10年(1428年)의 漢城府 人口는 10餘萬名 (5部 103, 328. 城底 6, 044)⁽⁹³⁾에 達하고 있으며 15世紀初期에 10萬以上의 人口를 가진 都市는 「유로」에서도 「파리」가 겨우 이에 비견 되었을 뿐 「런던」만 하더라도 그의 절반인 5萬人口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같이 漢城府는 그 當時로 보면 世界屈指의 大都市였으나 그의 住民은 王朝의 藩屏인 貴族官僚와 그들에 隸屬하는 人間들 뿐이었으며 정말 그들 자신의 經濟力を 배경으로 하는 市民다운 市民은 없었던 것이다.

首都 漢城府뿐 아니라 朝鮮王朝의 都市는 거의가 다 이러한 政治都市였다. 地方都市의 代表的인 것은 忠州 公州(忠清道), 全州(全羅道), 大丘(慶尙道), 原州(江原道), 海州(黃海道)咸興 永興(咸鏡道), 平壤(平安道)등이 있는데 이들은 다 觀察使가 主宰하여 監營을 설치한 地方行政都市이며 이밖에 開城府 江華 水原 및 廣州 등 留守가 配置되어 있는 四都를 위시하여 많은 群小都市가 全國에 散在해 있었는데 이들도 대개가 다 守令이 상주하는 政治的 또는 行政的 都市로서 그 規模는 漢城府를 除外하고는 대단한 것이 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측이 간다. 따라서 이들 都市를 中心으로 하는 交通 通信도 社會 經濟的인 것보다도 行政 軍事的것에 限定된 것이었다.

陸上交通으로서 사람은 步行 以外에 騎馬 또는 輜子에 주로 依存했고 物資의 輸送에는 人力 牛馬이외에 各 官衙 各 고을 各 驛은 모두 大車(二人以上이 밀면서 運搬하는 大型車), 便車(一人이 손으로 밀고 다니는 手車), 曲車(前部에 小輪, 後部에 大輪을 달아서 손으로 밀고다니는 小車) 및 杠轎(강주) (貴重品 運搬用, 가마形狀으로 中央臺上에 物品을 荷고 二人이 엔다) 등을 使用하였다.⁽⁹⁴⁾

交通 通信手段으로 가장 重要한 것은 驛(또는 站)으로서 主要通路에는 대략 30里 距離로 驛을 두고 馬匹과 役丁을 상시 대비하여 政府의 公文을 驛傳 遷送하는 이외에 公務旅行者나 公用에 準하는 私用旅行者에게 馬匹을 提供하고 宿食을 알선하며 驛馬를 使用할 때에는 「馬牌」라는 證票가 必要했다. 馬牌는 모든 公務旅行者에 대하여 兵曹에서 業級에 따라 證明書를 發給하고 尚瑞院에서 上奏하여 裁決을 얻어 發給된 銅製의 圓牌로서 이 證票에는使用者의 品數에 따라 各 驛에서 提供하는 馬匹數가 새겨 넣어 있는 것이다. 中央에서는 兵曹가 馬文을 發給하면 그에 따라 尚瑞院에서 馬牌를 내주었으며 外方에서는 監司, 兵, 水使가 發馬牌를 받아 公用이나 特別任務上 필요한 때에 이것으로 發馬케 하였다. 驛官은 驛馬利用者の 職 姓名과 日時를 써서 每 季節末에 兵曹에 報告하였다. 驛馬의 使用範圍는 法規上으로 严格히 制限되었으나 實際로는 그에 違反되는 事例도 적지 않았던 듯하다.

每驛에는 驛長 驛吏 및 驛卒들을 두어 驛管理와 公役에 當하게 하였고 一路線에 있는 若

(93) 世宗實錄 地理誌, 文獻備考 戶口考一.

(94) 經國大典 工典 舟車, 前揭書, p. 528.

干乃至數10個의 驛을 一區로 하여 이것을 驛道라 하고 每驛道에 그 區間에 있는 馬政을 掌理하는 主務官職을 둔것이 곳 察訪(從六) (別稱 驛丞(從九), 馬官 郵官)이었다. 察訪은 馬政을 管理하는 同時에 交通路上에 있는 그 地位를 利用하여 情報를 蒐集·報告하기도 하였다. 또한 首都의 周邊 및 京都의 主要各 渡船所에는 初期에 主務官으로 渡丞(從九)을 두었던바 뒤에 別將으로 되어 없어졌으며 이들은 모두 無緣外官이었다.

經國大典에 나타난 驛의 數는 540餘個이고, 京畿의 迎曙道 以下 全國 合計 40道의 察訪이 있었고 樞要의 道에는 兼察訪 一, 二員을 두어 非法을 察察하여 直啓케 한 것이다. 大體로 驛의 分布는 麗朝以來의 交通網을 다음과 李朝 數百年間 交通 通信上의 큰 發展 또는 轉換은 없었던 것이다. 驛은 三南에 가장 稠密하게 分布되어 있고 察訪도 慶尙道(11個)가 가장많고 平安道(2個) 咸鏡道(3個) 江原道(4個) 같은 山岳地帶에는 거의 驛의 施設이 없고 察訪도 그 面積에 比하여 配置가 極少하였으며 中部의 京畿 忠清兩道가 各己 6個에 黃海道가 4個程度 配置되었다.⁽⁹⁵⁾

驛傳制가 通信과 運輸의 機能을 兼한데 대하여 宣祖30年(1597)부터는 通信만을 爲主하는 「擺撥」의 制度가 생겨 全國의 摆撥網을 두어 邊境의 急速한 傳達을 폐하였다. 摆撥에는 騎撥과 步撥이 있었는데 前者は 二十五里마다, 後者는 三十里마다 각각 一站을 두고 每站에 撈將一人 軍丁數人(騎撥5丁 步撥2丁) 그리고 騎撥에는 馬五匹을 두었다.

公用旅行者의 宿食을 위하여 各州縣의 客舍인 「館」 이외에 各要路에 「院」을 두었으며 또 한 이들 公用旅行者에 대하여는 「草料」라 하여 沿路 各驛站에 車馬 從人 食料 등의 所定의 宿食供給을 命하는 文書를 兵曹 監司 兵, 또는 水使等으로 부터 發給받아 携帶케 한 것이다.⁽⁹⁶⁾

(2) 烽燧(烽火) · 潛運(漕轉)

이 時代의 重要한 通信手段으로 烽燧 또는 烽火가 있었다. 이것은 敵情을 알리는 信號로 胖불 或은 煙氣를 올리는 일로서 邊境의 緊急한 情況을 中央 또는 邊境의 基地에 알리는 軍事通信을 目的으로 마련된 것이다. 대개 數 10里의 一定한 距離마다 展望에 適合한 山頂要地에다 烽燧臺(煙臺)를 設置해 두고 夜間에는 胖불을 올리고 曰間에는 나무를 태워 불을 놓았다. 그리고 平常時에는 一炬 即 胖불한개를 敵이 나타나면, 二炬를 境界에接近하면, 三炬를 犯境하면 四炬를 交戰하면, 五炬를⁽⁹⁷⁾ 또 連日 接戰하면, 邊境으로 부터 順次로 서울로 連絡하였고, 曰氣가 不順하여 煙·火가 不通할 때는 烽燧軍이 차례로 달려서 通報하였다. 이리하여 中央에서는 兵曹가 이를 主管하여 五個 直峰線으로 부터의 報告를 接受하여 普通 翌日早朝에 緊急時에는 即時로 承政院에 報告토록 되었고 地方에서는 伍長이 所管鎮長에 報告하였다.

(95) 韓國史 震檀學會, 近世前期, pp. 494 ff 參考. 大東輿地圖, 繼大典 兵典 驛路 經國大典 工典 院字 등 參照.

(96) 經國大典 兵典 草料 pp. 375~376. 한편 私用旅行者는 私設의 「店」(酒肆)에서 宿食하였다.

烽燧의 主要線은 直烽이라 하여 東北의 永安道 慶興(第一臺), 東南의 廣尚道 東萊(第二臺)西北의 平安道 江界(第三臺)와 義州(第四臺) 그리고 西南의 全羅道 順天(第五臺)등의 五個地點을 起點으로 하여 서울의 南山(木覓山)烽火臺를 終點으로 하였으며, 그밖에 補助線으로서 間烽이라 하여, 山烽사이의 中間地域 遠隔地點에서 本峰까지 또는 國境方面의 前哨所에서 本鎮本邑까지 等의 連終을 달은 烽火가 있었다.⁽⁹⁸⁾

다음 運輸交通의 手段으로서 매우 重要視한 것은 漕運이었다. 漕運이란 國家에서 租稅로 徵收한 現物을 舟運으로 京都에 運送하는 것을 말하며, 漕運의 補助로 江水를 利用하는 것을 站運이라 하기도 하였다. 即 國家에서 漕倉과 水站을 海岸 또는 河川要地에 세우고 그 隣近의 州縣으로 부터 陸運 또는 水運으로 稅物을 集積하여 이것을 京都로 水運하는 것이다. 그리고 遠僻한 地方은 民船을 賃借하여 江·海를 통하여 管轄漕倉까지 上納하였다.

全國의 漕運網과 漕倉配置는 麗朝初에 制度化된 以來로 高麗末期에 倭寇의 侵略으로 一時 全廢된 일이 있었으나 朝鮮朝에서 곧 全國的으로 再整備 되었다.⁽⁹⁹⁾

漕運의 安全을 期하기 위하여 嚴密한 各種 法規도 마련되었다. 初期에는 京畿 左右水運判官(從5)을 두었고 뒤에 全羅 忠清兩道 都事로 하여금 海運判官(從5)을 兼하게 하여 監官 色史 沙工 및 格軍(水軍)의 共同責任下에 軍律로써 漕運에 當하게 하였다. 그리고 各道의 漕稅倉은 每年 11月初부터 翌年 正月까지 田稅의 收納을 完了하여야 하며 2月 20일부터 5月 15일까지에 京都로 漕運하되 船積 600石 限度로 每運에 30隻을 一「綜」으로 順次로 運航하게 하고 水路에 精通한 者로 하여금 指揮케 하여 護送의 義務를 負荷하고 다시 中間檢閱를 거쳐 中央에서 收納時에는 戸曹의 堂上郎官의 親往點檢이 있었고 漕運船의 難破時의 救助措置와 被害에 對한 嚴重한 責任追窮은 勿論하고 漕運의 成績如何에 따라 嚴重한 論功行賞을 하는 등 여러가지 法規가 있었다.

이와 같이 朝鮮王朝의 交通 通信은 社會 經濟的인 役割을 擔當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行政的 또는 軍事的인 役割을 한데 不過하였으며 朝鮮王朝의 中央集權的인 官人支配體制와 軍事國家體制를 維持하기 위하여 政治的都邑, 道路, 驛傳, 烽火 및 漕運등에 依存한 交通 通信網은 國家的으로 매우 重要한 것이었기에 그 整備와 管理에 萬全을 期하였던 것이다.

(97) 經國大典 兵典, 烽燧, 前揭書, pp. 459~460.

(98) 經國大典 前揭書, 文獻備考 兵考十六, 烽燧二 및 韓國史 前揭書 pp. 519 ff.

(99) 經國大典 戶典 漕轉 繼大典 戶典, 漕轉, 文獻備考 財用考四, 漕運, 萬機要覽 財用篇 收稅 漕轉 東國輿地勝覽.